

관세연구 24-0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2024. 12.

최인혁·이재선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 인 혁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특수전문직 2급

목 차

I. 서론	1
II. 일반 예술품의 개요	6
1. 예술품의 의미	6
가. 예술품의 개념	6
나. 예술품의 특성	7
2. 관세 목적상 예술품	9
가. 과세물건	9
나. 품목분류	11
다. 관세평가	23
III.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26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개요	26
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범위	26
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형태	30
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전제	32
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사례	33
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33
나. 3D 프린팅	40
다. NFT 아트	45

IV.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49
1. 디지털 제품의 분류	50
가. 국제적 논의	51
나. 관련 지침 및 결정사례	54
2. 전자적 전송물의 범위	59
가. 국제적 논의	59
나. 관련 지침 및 결정사례	63
V.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물 예술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67
1. 품목분류	68
가. 예술가가 직접 창작	68
나. 기계적 방법 및 대량생산 방식 제외	72
2. 관세평가	74
가. NFT 아트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화폐성	74
나.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치	79
VI. 시사점	87
1. 디지털 통상 법령의 제정	87
2. 변화에 유연한 제도의 도입	92
참고문헌	96

그림 목차

[그림 III-1] 아이다와 ‘인공지능 신(AI God)’	34
[그림 III-2] 레픽 아나톨의 ‘비지도(Unsupervised)’	37
[그림 III-3] 크리스 카쉬타노바의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39
[그림 III-4] 반고흐의 ‘꽃피는 아몬드나무’ 및 액자 복제품	42
[그림 III-5] 노세환의 ‘사과와 그 복제품’ 및 사과의 출력 과정	44
[그림 III-6] 뱅크시의 ‘멍청이들(Morons)’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46
[그림 III-7] 데미안 허스트와 ‘통화(The Currency)’	47

I. 서론

- 예술품이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예술은 특별한 재료, 기교, 양식 따위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말함)
 - 즉, 예술품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기 위해 제작하는 산출물 중 물품의 형태인 것을 말하며, 예술적인 특성을 가진 물품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예술품은 유형의 물품이므로 수출입 시 통관의 대상이 되지만 그 본질적 특성이 상업적 가치가 아닌 예술적 가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품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예술품은 소장·전시·수집 등을 위한 물품으로 판매·사용·소비 등의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물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짐
 -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희소성, 창의성 등에 따라 가치가 변동됨

- 따라서 수출입 통관 시 물품의 과세, 통계 등의 기준이 되는 「HS 협약」에 따른 품목 분류표에서는 예술품에 포함되는 회화, 판화, 조각 등을 특례하고 있음
 - 회화, 판화, 조각 등의 예술품은 일반적인 품목분류 기준인 성분·재질·용도 등이 아니라 창작자, 특별한 기교, 희소성 등을 기준으로 품목번호가 결정됨
 - 따라서 회화 등이 대량생산되거나 판에 박힌 기교로 제작된 경우 특례호에 분류되지 않고 성분·재질·용도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함

1)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c820b67f8c148479b0697e1b7ca269e>, 검색일자: 2024. 11. 5.

- 특계된 회화, 판화, 조각 등의 예술품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일본 등의 주요국은 기본관세율을 0%로 정하고 있음
 - 이는 예술품이 상업적성격 보다는 소장 목적의 성격이 강하고, 희소성을 가지므로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보호의 필요성이 작기 때문임
 - 또한 예술품은 판매를 통한 이윤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감상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추구하므로 문화육구 충족에 의미를 두는 것임²⁾

- 이와 같이 예술품은 관세 과세상 특별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기법·기술·구성 등을 이용한 예술품이 등장하는 경우 품목분류 등이 논란되어 옴
 - 예를 들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작품을 구성하는 텔레비전 혹은 모니터로 분류되어 관세가 과세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예술품으로 인정받았음³⁾
 - 또한 판화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가 창안한 포토그래픽 드로잉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은 회화 또는 판화로 분류할 수 없고 인쇄물로 분류됨⁴⁾
 - 해당 기법은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그림을 추가한 후 디지털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임
 - 이렇게 완성된 디지털 이미지를 인쇄한 후 작가가 고유한 한정판 번호와 제작연도를 기입하고 서명함

- 최근에는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블록체인과 같은 차세대 디지털 기술이 예술품의 창조·제작·거래에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인공지능 신경망 알고리즘이 그린 초상화가 수억원에 판매되거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린 그림이 경매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종종 들림
 - 3D 프린팅 기법으로 제작된 회화나 조각 등의 전시회가 열리기도 함
 - 또한 유명 작가의 그림을 디지털화하여 NFT(Non-Fungible Token)로 민팅

2) 김진영·임명규, 「수십억원짜리 미술품에도 세금은 '0원」, 『조세일보』, 2006. 6. 1.

3) 정준모, 「미술품은 관세 면제…'작품-상품' 헛갈리는 현대미술품 세금 재판도」, 『문화일보』, 2019. 3. 18.

4) 관세평가분류원 2021. 8. 2. 품목분류3과-4441

(minting)⁵⁾한 후 실물 그림을 불태우는 퍼포먼스가 화제가 되기도 함

-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예술품이 인간에 의해 창조된 산물로서 복제 또는 대량생산되지 않은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는 점과 대비되는 특성을 가짐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산출되거나 도면을 실제화하여 제작되며, 복제가 용이하고 동일한 기법·형태로 대량생산이 가능함
- 반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이 갖추지 못했던 희소성, 창조성과 같은 예술품의 특성이 보완되기도 함
 - 복제나 대량생산이 용이한 디지털 예술품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원본의 증명을 통해 희소성이나 유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적 학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제와 주제를 정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산출하며, 이는 인간의 창조 활동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예술품의 특성을 구비하게 된 경우, 즉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자 함
 -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복제나 대량생산으로 인해 희소성이나 창의성이 인정될 수 없어 예술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음
 - 그러나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해당 기술을 통하여 예술품의 특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실제로 예술품으로서 인정받은 사례가 출현하고 있음
-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기존의 예술품과는 다른 방법으로 창작되면서 예술품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이러한 예술품은 인간의 생각을 원천으로 창조되지 않거나 인간의 손에 의하여 제

5) 디지털 콘텐츠를 NFT화하는 작업물을 일컬으며, 주조한다는 뜻의 minting에서 유래함(네이버 매일 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44120&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자: 2024. 11. 7.)

- 작되지 않기도 하며, 물리적 실체가 없이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기도 함
- 이러한 창조, 제작, 생성 방식은 기존의 예술품과는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예술품을 진정한 예술품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논란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에 대한 관세 과세 시 기존 예술품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음
 - 디지털 형태로 창작된 예술품과 같은 디지털 제품이 관세의 과세대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국제적인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를 통한 예술품의 범위 설정 및 세율의 적용, 예술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 등의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에 대한 관세 과세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관세 과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함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사례와 특성을 검토한 후 관련되거나 유사한 기존 사례나 규정이 이에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에 앞서 인공지능(AI)의 예술 산출물, NFT 아트의 과세, 예술 창작물의 조각 투자 과세 등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와는 대상 디지털 기술·조세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김영순의 「디지털 시대의 예술 창작품에 대한 과세 방안」은 AI, NFT와 관련한 소득세에 관련해 검토하고 있음⁶⁾
 - 반면 본 연구는 AI, NFT뿐 아니라 3D 프린팅에 따른 예술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과세하기 위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또한 3D 프린팅 기술이 가져올 무역 및 통상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서 관련 과세상

6) 김영순, 「디지털 시대의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 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소, 2024.

- 쟁점을 살펴본 연구와 본 연구는 대상 디지털 기술·물품 등이 상이함
- 정재현·이재선(2020)의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른 무역 및 통관환경의 변화』는 3D 프린팅으로 발생할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뿐 아니라 무역 대상·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 등과 같이 무역 및 통관환경의 변화를 중점으로 검토함⁷⁾
 -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범위에 3D 프린팅 기술뿐 아니라 AI, 블록체인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는 반면 쟁점사항은 예술품에 관한 관세에 한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에 대한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관세행정이 변화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제II장에서는 일반적인 예술품의 의미와 관세 목적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예술품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함
 - 제III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범위와 형태를 살펴보고, 예술품으로서의 특성을 갖기 위한 전제를 설정한 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사례를 살펴봄
 - 제IV장에서는 제III장에서 구분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중 디지털 형태를 갖는 예술품의 관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함
 - 제V장에서는 제III장에서 구분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중 실물 예술품에 대한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을 품목분류, 관세평가로 나누어 살펴봄
 - 제VI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에 대한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을 토대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7) 정재현·이재선,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른 무역 및 통관환경의 변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I. 일반 예술품의 개요

1. 예술품의 의미

가. 예술품의 개념

- 예술은 아름다움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창조하는 인간 활동 자체와 그 활동에 따른 산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임
 - 예술은 소리예술, 시각예술, 언어예술, 종합예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⁸⁾

- 이러한 예술의 의미 중 그 활동에 의한 산물을 예술작품이라고 하며, 따라서 예술작품이란 독자적인 양식과 기법으로 만들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말함⁹⁾
 - 소리예술 활동에 따른 작품은 음악이며, 시각예술 작품은 미술·건축, 언어예술 작품은 문학, 종합예술 작품은 공연·영화 등임¹⁰⁾

- 이와 같이 예술작품은 모든 종류의 예술 활동에 따른 산물을 의미하므로 일정한 물리적 형태 여부를 불문함
 - 음악, 공연, 문학, 영화 등의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8)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p. 219.

9)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286c380616347b39505282abd657aa1>, 검색일자: 2025. 3. 21.

10) 설문원(2011), p. 219.

저장 또는 기록 매체를 통해 형체를 갖출 수 있음

- 반면 회화, 조소, 건축물 등의 시각예술 작품은 일정한 형태를 갖춘 물질적 대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예술품은 물리적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예술적 산물을 포함하는 예술작품과는 달리 유형의 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수 있음
 - 즉, 예술품의 '품'을 물품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예술작품 중 물리적 형체가 있는 것을 한정하여 예술품이라 지칭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품을 일정한 물리적 형태를 갖는 예술적 산물로 한정하고, 예술작품은 모든 예술적 산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
 - 따라서 회화, 조소 등과 같이 시각적 예술 활동에 의한 산물인 미술품을 예술품으로 보고, 부동산인 건축물은 제외하고자 함

- 다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 형태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는 예술적 산물의 경우 예술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검토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회화는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매개체의 개입 없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회화도 예술품으로 간주함
 - 반면 음악, 공연 등은 저장 또는 기록 매체를 통해서만 물리적 형태를 갖출 수 있으므로 음악 등은 예술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예술품의 특성

- 예술품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며, 예술적이라는 것은 ① 특별하고 독특하게 ② 창조·표현된 아름다움을 의미함
 - 다시 말해서 예술품이란 특별하고 독특한 재료, 기교, 양식 등을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들어 물품의 형태로 드러내어 나타낸 것임

- 우선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은 보통의 것과 구별되게 다르거나¹¹⁾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남을 말함¹²⁾
 - 특별함과 독특함은 보통 또는 일반적이라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흔하게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예술품은 드물고 흔하지 않다는 특성, 즉 희소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희귀적 가치를 가지게 됨
 - 희소성을 갖는 물품이 모두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품은 희소성이 라는 특성이 있어야 함

- 또한 예술품은 예술 활동으로 창조된 산물이므로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특성, 즉 창조성을 가지고 있음
 - 창조성 역시 희소성과 마찬가지로 예술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특성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예술품은 ① 희소성과 ②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없는 물품은 예술품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존의 물품이나 다른 물품을 모방·모사·복제한 것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예술품이라고 할 수 없음

11)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ad74efb708e460e9730fc23e3e89ab3>, 검색일자: 2025. 3. 21.

12)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d8bc58b969c4d81a1bb65d64b7f820c>, 검색일자: 2025. 3. 21.

2. 관세 목적상 예술품

- 예술품은 유형의 물품이므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관세를 과세하기 위한 예술품의 의미는 관세 과세요건에 따라 살펴볼 수 있음
 - 과세요건은 과세대상, 관세율, 과세가격, 납세의무자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물품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검토하지 않음
 - 과세대상은 과세물건의 확정, 관세율은 품목분류, 과세가격은 관세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관세 목적상 예술품의 의미를 검토하고자 함

가. 과세물건

- 「개정교토협약」에¹³⁾ 따르면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될 때 부담하는 관세율표상에 규정된 조세를 의미함¹⁴⁾
 - 즉, 관세의 과세물건은 관세율표에 기재되며, 해당 물건이 수입되어 관세영역에 들어오거나 수출되어 관세영역에서 나가는 때에 과세됨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¹⁵⁾ 관세를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음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하며,¹⁶⁾ 물품이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을 뜻함¹⁷⁾

13) 1973년 채택된 협약을 현대적 기법의 채택과 정보기술의 사용 극대화 도모를 위해 1999년 브뤼셀 관세협력이사회에서 채택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약칭(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3866>, 검색일자: 2025. 2. 18.)

14) 「개정교토협약」 일반부속서 제2장 E8./F11.

15) 「관세법」 제14조

16) 「관세법」 제2조 제1호

17)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26530f72a9247189eed14d0ef6d34ea>, 검색일자: 2025. 2. 18.

- 또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관세율표에서 규정하고 있어¹⁸⁾ 「개정교토협약」과 마찬가지로 관세율표에서 열거한 품목에 한하여 관세가 부과됨
 - 따라서 관세의 과세물건으로서 수입되는 때에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인지 여부는 관세율표에 포함된 품목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는 전기에너지를 제외한¹⁹⁾ 물리적 형태가 있는 유체물에 한하여 관세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관세의 과세물건은 수입되는 유체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이 포함되지만,²⁰⁾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하기 위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관세의 과세물건인 유체물에는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예술품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에 따른 산출물 중 물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물품을 말함
 - 예술은 소리예술(음악), 시각예술(회화·조소 등의 미술, 건축), 언어예술(문학), 종합예술(연극·오페라·무용 등의 공연예술, 영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²¹⁾
 - 이 중 부동산을 제외한 유체물은 시각예술에 해당하는 미술품이며, 따라서 예술품을 예술작품 중 물품으로만 한정한다면 미술품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

- 관세율표에서는 유형의 예술품, 즉 미술품에 대하여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에 특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술품은 관세의 과세대상이 됨
 - 관세율표에서는 통계나 관세율 적용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미술품을 구분하여 품목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 다만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술품은 관세율표

18) 「관세법」 제49조 내지 제50조 제1항

19) 전기에너지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체물이지만 관세율표에서 제2716.00호로 분류하고 있음

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21) 설문원(2011), p. 219.

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어 관세가 과세됨²²⁾

- 즉, 미술품이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에 분류되는지에 따라 관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분류되는 호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질 뿐임

- 한편 음악, 문학, 공연, 영화와 같은 예술작품도 저장 또는 기록 매체에 녹음, 표기, 녹화하는 경우 물리적 형태를 가질 수 있음
 - 관세율표에서는 저장·기록 매체를 제8523호에, 인쇄물을 제49류에, 영화필름을 제37류에 분류하여 관세를 과세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물품은 예술작품 자체가 아니라 예술작품을 저장 또는 기록한 것일 뿐이므로 예술품이 아닌 예술기록물로서 관세가 과세된다고 볼 수 있음²³⁾
 - 관세율표에서도 해당 물품을 예술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물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의 가치를 담아내는 매체로 보아 품목분류하고 있음

- 즉, 관세가 과세되는 예술품은 시각예술작품인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미술품을 예술품으로 한정하여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함
 - 음악, 문학, 공연, 영화 등의 무형의 예술작품은 엄격한 의미의 예술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세의 과세물건이 아니므로 연구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품목분류

- 세계관세기구는 「HS협약」을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관세, 무역, 통계 등에 사용되는 품목분류표를 마련함²⁴⁾
 - 「HS협약」 체결국과 기타 행정부, 국제조직, 국제 상업단체 등은 관세를 설정하거나

22) 미술품의 품목분류 기준은 다음의 ‘나. 품목분류’에서 살펴봄

23) 문학의 경우 기록 수단인 글자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기록된 언어에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책과 같은 인쇄물 또한 예술기록물로 보아야 함

24) 홍용기·이재선,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EU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p. 82.

경제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HS 품목분류표를 사용함

- 관세율표는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에 각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명시한 표로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됨
 - 「HS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HS코드라고 하며 HS코드 6단위는 「HS협약」 체약국 간 동일하고, 하위 단위는 각 체약국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용함

- 관세율표는 유형의 예술품, 즉 미술품을 제9701호 내지 9703호에 별도로 분류하여 관세율을 정하고 있음
 -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에는 다음과 같은 예술품이 분류됨²⁵⁾
 - 제9701호: 회화·데생·파스텔, 콜라주·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제9702호: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
 - 제9703호: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

- 제9701호 내지 제9703호는 순수예술을 지원하기 위해 0%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따라서 순수예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물품만을 분류함²⁶⁾
 - 구체적인 기준은 제97류의 주와 각 호의 해설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은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분류됨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기계적 방법이 사용되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경우, 실용성이 있는 경우 예술품으로 인정하지 않음²⁷⁾
 -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되어야 하며, 사진제판법이나 기계적 방법이 사용되지

25) 제97류의 표제에서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의 물품을 예술품(works of art)으로 표현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예술품이라고 지칭함

26) 부가가치세의 경우 예술창작품의 공급과 관세가 무세인 서화·판화·조각·주상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제27조 제1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제56조 제17호)

27) 관세청 블로그, 「예술품의 관세와 부가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18552477&categoryNo=14&proxyReferer=, 검색일자: 2025. 2. 18.

않아야 함

- 또한 시계, 가구, 조명기구 등과 같이 실용성이 있으면 예술품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움
- 미국의 경우 자국의 미술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예술품을 분류하고 있음²⁸⁾
 - 예술품은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할 것이어야 하며, 실용품이어서도 안 되고, 상업적 목적을 가져도 안 됨
 - 기능공에 의한 것, 기계적 산물은 예술품에서 제외됨
- 다만 예술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예술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므로 해당 호의 분류 여부로 예술적 가치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 즉,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과 객관적 사실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성격으로 인해 그 기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이유로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예술품이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에 분류되지 않고 관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있어 왔음
 - 관세 목적상 품목분류는 예술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율표에 명시된 주, 호의 용어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

1) 제9701호의 회화

- 제9701호에는 ① 회화·데생·파스텔 ②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③ 모자이크가 분류됨
 - 이들은 손으로 직접 그렸거나 제작되어야 하며, 또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배열 또는 조립되어야 함

28) 최성호, 「예술품의 국제거래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법학논고』, 제6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pp. 333~334.

- 회화·데생·파스텔은 손으로 직접 그린 것만이 제9701호에 분류되며, 전부나 일부가 다른 방법으로 그려진 것은 제외됨²⁹⁾
 - 회화의 모사도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라면 그 물품의 예술적인 가치에 관계 없이 제9701호에 분류함
 - 제9701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들이 있음
 - 캔버스 위에 그린 것에 상관없이 사진제판법에 의하여 만든 회화
 - 윤곽, 데생을 손으로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은 판화나 인쇄에 의하여 만든 회화
 - 수 개의 인화틀이나 형판에 의하여 만든 것으로서 예술가에 의하여 보증된 소위 진정모사 등

-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은 여러 가지 재료의 조각으로 구성되고 그림이나 장식용 디자인, 모티프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립하여 배면에 부착시킴³⁰⁾
 - 배면은 전체 디자인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장식이나 그림적 요소를 갖추고 손으로 그려지거나 인쇄됨
 - 콜라주의 품질은 기념품으로 저렴하게 제작된 것부터 진정한 예술품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장인정신이 필요한 것까지 포함함
 - 하나의 재료로 구성되는 물품은 제외되며, 이러한 물품은 그 재료에 따라 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함

- 제9701호의 모자이크 작품에는 예술가가 디자인 또는 제작했더라도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이 포함되지 않음³¹⁾
 - 즉, 모자이크는 손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독특하고 재생산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모자이크는 여러 형상·재료의 작은 조각을 나란히 배열하여 제작하며, 작은 조각들이 모여 무늬나 기하학적 도안을 형성함

29) HS2022 제9701호 해설 (A)

30)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701호 해설서 (B)

3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7류 주 2, 제9701호 해설서 (C)

- 회화 등을 제9701호에 분류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작가의 약력과 전시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작가가 직접 제작하여 그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지 검토함
- [사례 II-1]의 경우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진을 오려 붙이거나 연출된 촬영을 한 경우 작가의 작품으로 보아 제9701호에 분류함

[사례 II-1] 제9701호의 콜라주

-
- 물품개요
 - 두 개의 액자로 구성된 작품으로 하나는 작가가 찍은 여러 사진에서 특정 이미지만 오린 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뒷면에 폼보드를 부착하여 프레임 순서대로 액자에 끼워 넣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 제작과정과 작가의도를 찍은 사진출력물임
 - 작가는 영화 'The bird'에서 여주인공이 섬으로 들어가는 중 새들의 공격을 받는 장면을 재현하여 서식지를 찾아 도시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새와 인간, 즉 자연과 도시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환기시키고자 함
 - 작가개요
 - 작가 정연두는 사진 및 영상, 퍼포먼스 작업을 주로 하는 미디어아티스트로 서울대교 조소과 학사,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였음
 - 2007년 사진-영상부문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8년 상하이비엔날레 아시아 유럽문화상 등을 수상하였고, 다수의 개인전시회 이력이 있음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7류 주4에서 이 류와 이 표의 다른 류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주 제1호부터 주 제3호까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이 제97류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충족한다면 다른 류에 우선하여 제97류에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9701호에는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콜라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쟁점물품은 여러 다양한 사진들을 원하는 이미지를 오려 사용하거나 사진 자체를 사용하여 작가가 의도하려는 화면을 구현한 작품으로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품에 해당하므로 제 9701.90-0000호에 분류함
-

2) 제9702호의 판화

- 제9702호의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판화를 말하며,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만든 것은 포함하지 않음³²⁾
 -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판화는 색상이나 제작공정, 재질과 관계 없이 제9702호에 분류됨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사방법으로 제작된 석판화도 오리지널 판화로서 제9702호에 포함됨

- 제9702호에는 오리지널 판화만이 분류되며, 오리지널 판화는 수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함³³⁾
 - 복사화·위조화·복제화와 오리지널 판화는 종이의 품질,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자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판화의 경우 원판에 작성된 그림이나 도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작되므로 인쇄된 서화와 구분이 쉽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함
 - 판화작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은 석판화 기법이 인정되어 판화로 분류된 경우와 인쇄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인쇄된 서화로 분류된 경우가 있음³⁴⁾
 - [사례 II-2]의 ‘호텔 아카트란: 첫 날(Hotel Acatlan: First Day)’은 제9702호에, [사례 II-3] ‘재떨이(Ashtray)’는 제4911호에 각각 분류됨

- 이와 관련하여 「HS협약」의 2022년 개정 시 우리나라는 제9702호의 한글표기를 기존의 판화·인쇄화·석판화에서 동판화·목판화·석판화로 변경함

3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97류 주 3, 제9702호 해설서

33) 「관세법」 제9702호 해설서

34) 관세청 블로그, 「예술품의 관세와 부가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18552477&categoryNo=14&proxyReferer=, 검색일자: 2025. 2. 18.

- 이는 인쇄화(prints)라는 표기가 제4911호의 인쇄된 서화(printed pictures)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임

[사례 II-2] 제9702호의 석판화

(데이비드 호크니의 ‘호텔 아카트란: 첫날(Hotel Acatlan: First Day)’)

- 사건개요
 - 수입자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판화 1점을 수입하면서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 디자인, 사진이 분류되는 제4911.91-9000호로 신고함
 -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제9702.00-200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
 - 수입자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수입자의 주장
 - 해당 물품은 공판화의 일종인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작가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작가가 연필로 작품의 하단 여백에 용도, 작품명, 제작시기, 친필서명을 기재한 원본판화임
 - 원본판화는 한정된 부수를 가진 복수의 원본이며, 복제판화는 원본이 따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수의 제한 없이 프린팅한 것을 말함
 - 한국판화가협회나 유네스코에서는 작품에 용도 및 일련번호 기재, 작가의 친필서명 등을 원본판화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원본판화의 한정부수는 작가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작품 전체 부수의 10% 이내를 작가의 보관용(Artist Proof)으로 작가가 보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처분청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한 공식레터의 ‘판화공방에 지시’하라는 문구를 근거로 작가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당 작품을 제작한 장소가 공방이라는 사실을 표명할 뿐임
 - 공식레터는 수출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작가가 해당 물품의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했는지 등의 세부적인 제작 내용은 제시할 수 없음
 - 미술업계의 관행상 작가는 친필서명 등으로 자신이 직접 수행한 작품임을 표명·보증하는 것으로 족하며, 해당 작품의 A.P라는 표시 또한 미술업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작가보관용이라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작가가 직접 판화를 제작하고 수행했다는 사실을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실크스크린 기법의 일부 기법이 사진제판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제작에 사진제판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음을 자료로 제출함
 - 수입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공식레터와 해당 물품의 추상적인 이미지 형태, 종이 등의 바탕 재질에 이미지화된 특성 등을 토대로 사진제판법을 사용해서는 구현될 수 없다는 견해를 처분청에 제출함
- 처분청의 의견
 - 제9702호는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한 판화만을 분류하며, 해당 물품은 작가가

[사례 II-2]의 계속

-
- 밧그림만 그렸을 뿐 원판을 그리지 않았으므로 예술가의 손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해당 물품은 작가의 요청에 따라 판화공방에서 작가의 밧그림을 토대로 불상의 작업자가 원판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제작된 물품임
 - 공식레터의 '판화공방에 지시'라는 단어는 타인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서 작가가 제3자를 시켜 해당 물품을 제작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예술가의 손으로 완전히 직접 제작한 판화가 아니므로 그 제작방법과 무관하게 제9702호에 분류할 수 없어 사진제판법 사용 여부는 쟁점사항이 아님
 - 참고로 해당 물품에 사진제판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수입자의 자료는 제작 방법에 대한 자료라기보다는 완성된 판화의 외관만을 근거로 추론하거나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수출자가 판화로 추정하는 자료만을 제출하였음
 - 또한 품목분류는 통칙 및 주 규정 등에 따르는 것이지 한정부수로 제작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희귀적 가치 또는 작가에 의해 완성된 예술적 가치로 제97류에 분류하는 것이 아님
- 판단 및 결정요지
 - 해당 물품은 작가가 원판에 직접 밧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의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해당 물품에 작가 보관용이라는 의미의 A.P와 작가의 서명, 제작연도가 친필로 기재되어 있어 오리지널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점
 - 작가는 1977년 이 후 자신의 공방을 운영한 사실과 판화 작품의 특성상 공식레터에 '판화공방에 지시하고' 라는 문구만으로 해당 물품을 작가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해당 물품은 사진 이미지 등을 사용한 사진제판법이 아닌 드로잉 방법으로 제판하여 제작한 판화라는 수출자의 소명이 있었고, 처분청도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물품이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제작되지 않은 점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물품을 제4911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례 II-3] 제9702호에서 제외된 인쇄된 서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재떨이(Ashtray)’)

- 사건개요
 - 수입자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제작한 판화 1점을 수입하면서 오리지널 판화가 분류되는 제 9702.00.1000호로 신고함
 - 처분청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 디자인, 사진이 분류되는 제 4911.91-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자에게 품목번호를 재검토할 것을 안내함
 - 이에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 정정 신청을 통해 처분청이 안내한 품목번호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수입자는 처분청에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제9702.00.200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수입자의 주장
 - 제9702호의 해설서에 따르면 작가가 손으로 제작해야 하는 것은 판화작품이 아니라 원판으로 작가가 손으로 제작한 원판으로 인쇄한 판화는 제9702호에 분류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함
 - 또한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과 관계가 없다는 해설은 해당 물품과 같이 디지털 프린터 방식 등 다양한 판화 제작방법이 제9702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임
 - 작가가 또한 디지털 프린터가 전통 판화기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판화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판화제작을 위한 원판인 디지털 파일을 직접 창작한 자신의 판화작품이라고 밝힘
 - 원본판화는 작품을 찍어내기 위한 판을 작가가 직접 제작한 것을 의미하고, 원본판화와 복제 판화는 원판을 작가가 제작하였는지에 따라 구분함
 - 즉, 기계적이거나 사진제판법의 방법으로 제작한 원판에 의한 판화를 제9702호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원본 판화를 스캔하여 인쇄한 복제판화가 이에 따라 제외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물품은 디지털 프린터를 위한 원본 디지털 파일인 원판을 작가가 직접 제작하여 인쇄하였으므로 제9702호에 분류해야 함
 - 또한 해당 물품은 전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예술품이 분명하므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것이나 수입될 경우 처분청의 주장대로 제4911호에 분류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처분청의 의견
 - 제9702호의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기법이라는 해설에서 기계적이라는 단어는 ‘기계를 사용하여 또는 기계와 관련된’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며, 사진제판이란 사진을 응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방법의 총칭을 뜻함
 - 그리고 제49류 해설에 따르면 기계적 방법을 기계식에 의한 복사,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사진인쇄 등과 같이 기계를 사용하거나 기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반복적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해당 물품이 일정 수량으로 한정하여 인쇄되었고, 개별 작품에 작가의 서명과 일련번호가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사진 촬영 후 자동자료처리기계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 조작, 보정 및 프린터 출력이라는 기계적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제97류에서 제외됨

[사례 II-3]의 계속

- 또한 제97류에는 통칙 및 그에 따른 주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지 작가에 의해 완성된 예술적 가치 내지 제한된 수량으로 인한 희귀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정만으로 제97류에 분류할 수 없음
 -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당 물품은 제작방법상 기계적 방법에 의한 인쇄화에 가깝다는 점에서 제97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판단 및 결정요지
 - 해당 물품은 ① 그림의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직접 사진 촬영 ②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고 디지털 방식으로 드로잉 추가 ③ 촬영한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 ④ 재구성한 이미지에 드로잉을 추가 ⑤ 제작된 디지털 이미지를 인쇄하는 과정을 거쳐 제작됨
 - 해당 물품은 작가가 촬영한 이미지를 컴퓨터로 디지털 편집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러한 제작과정에서 기계적 방법 또는 사진제판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물품을 제9702.00-200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수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료: 조세심판원 2023. 3. 13. 조심2022관0096

3) 제9703호의 조각과 조상

- 제9703호에는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을 분류하며 석재·재생석·테라코타·목재·아이보리·금속·왁스 등을 환조·부조·음각하여 만들어짐³⁵⁾
 - 이들 작품의 제작방법은 ① 경질재료를 사용하여 예술가가 직접 조각하거나 ② 예술가가 유연한 재료를 어떤 모양으로 성형하는 방법이 있음
 - 성형 방법에 의한 작품은 청동이나 플라스터로 주조하거나 소성과 그 밖의 방법으로 경화함
- 제9703호에는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대량생산된 복제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하지 않음³⁶⁾
 - 특히 유연한 재료를 성형하는 방법으로 만든 작품은 예술가에 의해 대리석이나 기타 경질재료로 복제되기도 함³⁷⁾

35) 「관세법」 제9703호 해설서

36) 「관세법」 제97류 주 4

37) 「관세법」 제9703호 해설서

- 다만 제9703호에는 조각가가 만든 원작의 모델뿐 아니라 유연한 재료를 성형한 방법으로 만든 카피와 복제품도 포함되며, 이들은 12개를 넘는 경우가 드뭄³⁸⁾
 - 제9703호에 포함되는 카피, 복제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점토나 플라스틱 재료로 예술가의 아이디어를 모델로 조잡하게 성형한 후 이를 기초로 만든 클레이 폼
 - 클레이 폼으로부터 직접 제작한 플라스터 모델(석재나 목재의 작품제작용이나 금속이나 왁스의 주조 주형 준비용의 모델로 사용됨)
 - 대리석·목재·왁스·청동제 등의 두 개나 세 개의 카피, 테라코타나 플라스터로 만든 소량의 카피

- 이러한 카피나 복제품도 예술가가 만든 원작으로 취급하며, 이것은 조각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지 다른 예술가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없음³⁹⁾
 - 카피는 예술가가 각 단계에서 모델을 첨가시키거나 주물에 교정을 가하고, 작품마다 녹청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똑같은 물품이 있을 수 없음

- 특히 미국은 추가 주를 통해 조각가의 오리지널 조각뿐 아니라 원작으로 만든 12개의 주물, 복사품, 복제품을 포함한다고 명시함⁴⁰⁾
 - 복제품 등은 조각가 자신이나 다른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규모의 변화, 복제 등의 시기에 조각가의 생사 여부를 불문함

38) 「관세법」 제9703호 해설서

39) 「관세법」 제9703호 해설서

40) HTSUS(2025) 제97류 미국 추가 주 1

[사례 II-4] 제9703호에서 제외된 장식용 유리제품

- 개요
 - 꽃병, 접시, 촛대는 Ioan Nemtoi가 제작하고 서명한 분유리 제품으로 송장 1에 꽃병(no.1) 400개, 접시 570개, 촛대 630개가 송장 2에 꽃병(no.1) 542개, 꽃병(no.2) 14개, 촛대 540개가 포함됨
 - 해당 물품은 제9703.00.00호의 오리지널 조각 및 조상으로 수입신고 되었다가 제7013.99.90호의 유리제의 식탁, 주방, 화장실, 사무실, 실내장식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품으로 정산됨
 - 이에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재료와 관계없이 수입신고한 대로 제9703.00.0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분석
 - 해당 물품이 예술작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술가의 직업적 지위이며, 일반적으로 예술가는 미술과정을 졸업했거나 공개 전시회에서 작품의 전시를 허락받아 미술계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아야 함
 - 또한 예술작품은 특정 예술기관에서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품질과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녀야 하며, 일반적으로 예술가의 서명을 포함함
 - 해당 물품을 만든 Ioan Nemtoi는 미술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전시회에서 작품을 전시했으며, 자신의 유리 조각에 각각 서명하므로 HTSUS 목적상 예술가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HTSUS에서는 실용적 품목을 예술작품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꽃병, 접시, 촛대는 각각 실용적 목적을 가질 수 있음
 - 다만 꽃병의 경우 실용적 특성이 예술적 특성 속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 해당 꽃병은 본질적으로 장식의 목적으로 갤러리 등에서 전시되고, 실용적 성격보다 예술적 성격이 우선하도록 디자인되었음
 - 반면 접시와 촛대는 본질적으로 장식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용적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물품의 수입수량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97류의 추가 주와 제9703호의 해설에서 12개를 추가하는 구조물, 복제품, 복사품은 제9703호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HTSUS나 해설서에 정의되지 않은 관세 용어는 일반적 또는 상업적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바 대량생산은 특히 기계로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상업적인 판매, 이익 또는 성공에 중점을 두고 준비, 수행,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됨
 - 예술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각 품목을 무제한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송장의 수량은 12개라는 품목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수입수량은 대량이라고 볼 수 있음
- 결정
 - 해당 물품은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상업적 성격의 대량생산된 복제품이므로 제9703호에서 제외됨
 - 따라서 해당 물품은 제7013.99.90호의 유리제의 식탁, 주방, 화장실, 사무실, 실내장식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용품으로 분류됨

다. 관세평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하며,⁴¹⁾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함
 - 관세율표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과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증가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예술품이 분류되는 제97류 또한 증가세가 적용됨⁴²⁾

-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원칙, 즉 관세평가방법은⁴³⁾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은 이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⁴⁴⁾
 -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따라 1947년 마련한 GATT 제7조 관세평가의 일반원칙이 WTO 출범 후 「WTO 관세평가협정」으로 발효됨⁴⁵⁾

- 「WTO 관세평가협정」 일반서설의 목적에서는 관세목적에서 물품의 평가는 가능한 한 대상 물품의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음⁴⁶⁾
 - 거래가격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수출입거래에서 수입자와 수출자가 합의한 가격이며, 이는 상업상 매우 현실적인 기준임

- 거래가격은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하여 산출함⁴⁷⁾

41) 「관세법」 제15조

42) 제3706호의 영화필름은 종량세 품목이지만 이는 영화라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필름이라는 매체에 기록된 예술기록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논외로 함

43) 관세평가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함(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188>, 검색일자: 205. 2. 20.)

44) 홍용기·이재선(2023), p. 72.

45)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p. 289~290.(홍용기·이재선(2023), p. 72.에서 재인용)

46)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 32.

47)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실제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실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이러한 가격은 판매계약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조건임⁴⁸⁾
 - 즉, 거래가격은 판매계약의 당사자들이 정한 가격에 대해 특정하게 정한 최소한의 조정만으로 확정됨⁴⁹⁾
- 이러한 관세평가의 원칙에 따라 예술품의 과세가격도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실제지급 가격에 필요한 경우 특정 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됨
-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판매거래에 따른 경우에 한하며 임대, 증여, 대차 등으로 인한 경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다만 예술품은 그 가치가 추상적이므로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주관적이고 불분명하며, 가격이 쉽게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가격의 진위 확인이 어려움
- 예술품은 제조원가와 이윤 등을 바탕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물품과는 다르게 예술적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됨
 - 또한 작가의 손에 의해 직접 한정수량만으로 제작되는 예술품의 특성상 동종·동류·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없음
- 더욱이 예술품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관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로 예술품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음⁵⁰⁾
- 관세청 관계자는 예술품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출입물품은 신속한 통관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수출입신고서류를 믿고 수리한다고 말함⁵¹⁾
- 이러한 이유로 예술품은 송장가격을 허위로 작성하여 가격을 저가 또는 고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데에 이용되기도 함⁵²⁾

48) 김기인(2015), p. 93.

49) 김기인(2015), p. 57.

50) 조성식, 「삼성 비자금-국제 갤러리, '수상한 거래' 내막」, 『신동아』, 2008. 3. 7.(<https://shindonga.donga.com/society/article/all/13/107181/2>, 검색일자: 2025. 2. 20.)

51) 유재철, 「고가 미술품 해외거래는 과세 사각지대」, 『시사저널』, 2016. 5. 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검색일자: 2025. 2. 20.)

- 예술품에 대한 허위 설명을 근거로 조작된 가격의 예술품에 대한 거래대가 지급에 불법자금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자금원천을 부당하게 은닉함
- 또는 예술품을 공모자에게 원래의 가치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후 공모자로부터 수수료를 뺀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이 이용되기도 함⁵³⁾

52) 이재경, 「미술품 관련 돈세탁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일감법학』, 제3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p. 162.

53) 노자운, 「미술품 이용해 검은돈 세탁하는 중국 부자들」, 『조선일보』, 2014. 2. 2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4/2014022400531.html, 검색일자: 2025. 2. 20.)

Ⅲ.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개요

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범위

- 디지털이란 전자적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현상을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은 디지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을 일컫음⁵⁴⁾
 - 디지털 기술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지능정보기술과 정보 수집·가공·저장·처리 관련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⁵⁵⁾

- 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3D 프린팅, 로봇·드론 등의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시대가 도래함
 - 이러한 디지털 기술은 물리, 생물, 디지털이 융합되어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함⁵⁶⁾

- 이러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인간 고유의 창조적 활동의 산물인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술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54)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96119&sense_no=136754&viewType=confirm,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477857&viewType=confirm, 검색일자: 2025. 2. 4.

55)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kr/contents/cultureDigital_about/view.do#content, 검색일자: 2025. 2. 4.

56)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8919&cid=43665&categoryId=43665>, 검색일자: 2025. 2. 4.

- 예술은 아름다움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분야로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나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그 경계를 허물고 있음
- 물론 이전에도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회화, 디지털 기기를 조형한 설치미술 등 예술품의 창작이나 제작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 왔음
 - 설치미술가 김수자는 4개 도시에서 촬영된 영상을 DVD로 제작하여 정육면체 공간에서 4개 벽면에 상영하는 작품인 ‘바늘여인’을 선보였음⁵⁷⁾
 - 또한 판화작가인 데이비드 호크니는 사물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그림을 추가한 후 이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함⁵⁸⁾
- 이러한 예술품은 인간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매체로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함
 - ‘바늘여인’의 관세 등 부과취소 소송의 재판부는 현대 미술에서 작품의 표현방법과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판시함⁵⁹⁾
 - ‘바늘여인’은 디지털 매체 및 기기인 DVD, TV 모니터, DVD 플레이어로 구성되어 작가의 퍼포먼스를 촬영한 영상을 상영함
- 이와는 달리 최근 예술품에 이용되는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독특한 발상이나 뛰어난 기교, 또는 이에 따른 희소가치를 대체하고 있음
 - 일례로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의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미드저니(Midjourney)라는 AI로 제작한 작품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우승함⁶⁰⁾
 - 미드저니는 텍스트로 된 설명문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이미지로 변환시켜주는 AI 프로그램임

57) 김수경, 「비디오아트용 DVD는 예술품」, 『동아일보』, 2004. 2. 1.(<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40201/8025019/1>, 검색일자: 2025. 2. 5.)

58) 관세평가분류원 2021. 8. 2. 품목분류3과-4441

59)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8898#_digitalcamp, 검색일자: 2025. 2. 5.

60) 김지연,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연합뉴스』, 2022. 9. 4.(<https://www.yna.co.kr/view/AKR20220904008400009>, 검색일자: 2025. 2. 7.)

- 또한 비플(Beeple)이 14년간 매일 그린 5,000점의 그림을 콜라주한 NFT(Non-Fungible Token)작품 '매일: 첫 5000일'이 6,930만달러에 경매되기도 함⁶¹⁾
 - 이는 NFT를 통해 예술작품의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보증됐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예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성과 희소성을 창조·표현함으로써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의 가치 여부, 디지털 콘텐츠의 희소성에 따른 투기로의 변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반면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예술품의 표현 수단이나 매체로 사용한 경우 해당 예술품이 예술품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음
 -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수단이나 매체로 사용된 것이지 디지털 기술이 예술성의 특성을 부여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을 차세대 디지털 기술이 창의성과 희소성을 창출하는 데에 이용된 예술품으로 한정하고자 함
 - 디지털 기술이 수단이나 매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술품의 특성인 창의성과 희소성을 차세대 디지털 기술이 대체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에는 AI가 창작한 미술품, 3D 프린터로 인쇄된 조각·조상, NFT 아트가 포함될 수 있음
 - AI 창작물은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여 디지털 형태 또는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물리적 형태로 표현하며, AI 기술이 창의성을 창출함
 - 3D 프린터는 설계도면을 적층방법으로 입체 출력함으로써 인간이 표현하지 못하는 기교·형태를 물리적으로 실체화함

61) 최윤영, 「NFT 아트는 진짜 예술인가」, 『ANTI EGG』, 2023. 10. 2.(<https://antiegg.kr/17703/>, 검색일자: 2025. 2. 7.)

- NFT 아트는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 기계적 방법에 따라 제작된 예술품에 원본증명을 제공함으로써 희소성을 갖게 할 수 있음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유형의 예술품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함

- 이러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에 대해 기존의 예술품과 동일하게 관련 법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사항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임
 - AI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나 NFT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 등이 마련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기준이 정립되고 있는 중임

- 이와 같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의 미비는 이를 국제거래하는 때에 적용될 관세 과세 부분에서도 존재함
 - 일반적인 예술품에 대한 관세 관련 규정에서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회화, 판화, 조각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 따라서 AI가 그린 그림, 3D 프린터로 인쇄된 조각 등을 예술품으로 보아 예술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세를 과세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수 있음
 - 통관 및 관세 규정에서는 예술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인간의 제작, 특별한 기교 등으로 정하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NFT 아트가 예술품을 희소성 및 원본성이 보증된 디지털 형태로 전환 시킴으로써 관세 과세 대상의 범위도 쟁점으로 대두될 수 있음
 - 무체물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전달매체 등을 통해 물리적 형태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왔음
 - NFT 아트로 인해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는 품목의 범위가 예술품까지 확대됨으로써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예술품 또한 관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일반적인 예술품의 개념을 벗어나는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기존의 관세 과세 절차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을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세 과세 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형태

- 본 연구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창조·제작·전송되는 미술품을 말함
 - 예술품을 물품 형태의 예술 활동의 산출물로 본다면, 시각예술에 따른 회화, 조각, 조상 등의 미술품이 예술품에 해당함
- 미술품, 즉 물리적 실체가 있던 예술품의 창조·제작·전송에 차세대 디지털 기술이 이용되면서 예술품의 물리적 형상과 상태가 기존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음
 - 예술품의 물리적 실체가 사라지거나 하나의 예술품이 동시에 물리적 형태와 비물리적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며, 무형의 예술품이 형태를 갖추게 되기도 함
- 이러한 변화 중 유형의 예술품이 무형의 것으로 대체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예술품이 디지털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즉,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물질적인 예술품이 비물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예를 들어 AI 플랫폼은 사용자의 명령어에 따라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이미지 형태의 그림을 그림
 - 기존에는 캔버스나 종이에 그려져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 AI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창작된 것임
- 미술품을 디지털화하여 NFT로 민팅한 후 실물을 소각하고, 디지털화된 미술품을 전

자적으로 저장·거래·전송하기도 함

- 이는 미술품의 형태를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경시켜 실물을 디지털본으로 대체한 것임
- 이와 같은 디지털화된 예술품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물리적 형태가 디지털 형태로 변환한 것이므로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회화, 조각 등의 예술품과 동종의 물품으로서 그 형상과 상태만 다른 것이므로 예술품에 해당함
- 반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물리적 형태가 있기도 하며, 이러한 예술품은 실물로만 존재하거나 실물에 디지털 구성요소가 추가되기도 함
 - 즉, 실물 예술품은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화된 예술품뿐 아니라 디지털 구성요소의 기초자산이 되는 예술품을 포함함⁶²⁾
- 가령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학습된 데이터와 센서 등을 통해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림
 - 인간의 명령어, 학습된 디지털 이미지, 입력된 정보 등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실물로 구현하는 것임
- 3D 프린팅 기술 또한 디지털 설계 파일에 따라 원재료를 얇은 층으로 쌓아 입체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조각이나 조상을 제작함
 -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설계 파일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물리적 실체가 있는 예술품으로 인쇄되는 것임
- 한편 유형의 예술품 거래내역을 투명하고 무결하게 기록하는 권리증명서 및 원본증명서로서 NFT가 발행되는 경우 예술품은 NFT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게 됨

62)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물리적 형태가 있는 예술품은 유형의 예술품으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실제화되거나 디지털 구성요소를 갖게 된 예술품은 실물 예술품으로 구분함

- 유형의 예술품은 NFT의 고유식별자, 거래정보 등이 기록된 메타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구성요소와 함께 거래됨
- 이와 같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① 디지털 형태 ② 실물 형태이며, 실물 예술품은 실물만 있는 것, 디지털 구성요소가 추가된 것으로 구분됨
- 관세는 유형의 물품이 과세대상이므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형태에 따라서 관세 과세와 관련된 쟁점사항이 달라지게 됨

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전제

-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디지털 형태이거나 인간이 아닌 기계에 의해 제작되므로 복제 또는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복사나 다운로드를 통해 복제본이 무한으로 생성되어 누구나 동시에 소유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기계적 장치로 제작된 예술품 또한 동일한 규격, 사양의 예술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이나 기계적 방법으로 제작된 예술품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는 특징은 해당 예술품의 예술적인 가치를 훼손함
-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소유할 수 있고, 여러 사람에게 복제본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독창적인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예술적 가치가 내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즉,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중 일부는 예술품의 특성인 희소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술품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움
- 디지털 형태거나 기계 제작된 예술품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복제할 수 있으므로 예술품으로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그 원본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술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NFT가 활용될 수 있음
 - NFT는 블록체인에 예술품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정당한 소유자만이 풀 수 있는 암호체계를 통해 예술품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 기계적으로 생산된 예술품은 NFT를 통해 희소성을 인정받은 것을 전제로 함
 - NFT와 같은 권리증명 기술을 통하여 독점적인 소유권과 원본으로서의 가치가 보존된 상태여야 예술품으로서 관세 과세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음

2.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사례

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1)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다(Ai-DA)

- 2019년 영국에서 출시된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다(Ai-DA)는 얼굴, 몸, 팔 등 인간의 형태를 갖추고 그림을 그려 AI 화가로 불림⁶³⁾
 - 아이다는 근현대 미술 전문가인 에이단 멜러가 옥스퍼트대의 AI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영국의 로봇 기업인 엔지니어드아트에서 약 2년간 제작함
- 아이다는 눈에 장착된 카메라로 사물을 관찰하고,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작품을 구상하여 생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냄⁶⁴⁾

63) 김주영, 「인간을 그리는 로봇, 아이다(Ai-da)」, 『윙뉴스』, 2021. 8. 11.(<https://www.wi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6>, 검색일자: 2025. 2. 10.)

64) 김주영(2021. 8. 11.)

- 즉, 아이다는 디지털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처럼 직접 붓을 잡고 인간이나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릴 수 있음
- 아이다가 그린 ‘인공지능 신(AI God)’이라는 작품명의 앨런 튜링의 초상화는 2024년 11월 소더비 경매에서 약 108만 5,000달러에 판매됨⁶⁵⁾
- 아이다는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의 캠브리지대학 시절 초상화를 바탕으로 15장의 그림을 그림
 - 앨런 튜링은 컴퓨터공학 및 정보공학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수학자·논리학자임⁶⁶⁾
 - 계산기가 어디까지 논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튜링테스트’라는 AI 실험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현재도 AI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됨⁶⁷⁾

[그림 III-1] 아이다와 ‘인공지능 신(AI God)’



자료: 임대준(2024. 11. 9.)

-
- 65) 임대준, 「AI 로봇의 튜링 초상화, 소더비서 15억에 낙찰…“미술 시장 신기원 열어”」, 『AI 타임스』, 2024. 11. 9.(<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131>, 검색일자: 2025. 2. 10.)
- 66)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3692&cid=40942&categoryId=33451>, 검색일자: 2025. 2. 11.
- 67) 문지연, 「18억원에 팔린 수학자 초상화 한 점…대박 난 화가, 사실 로봇이었다」, 『조선일보』, 2024. 11. 12.(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1/09/GM5RPGFAMBCNNLQTAPPY37IFVA/, 검색일자: 2025. 2. 10.)

- 이와 같이 아이다는 일견 인간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와 환경의 인식 및 지각에서는 인간과 차이를 보임
 - 대상을 지각하는 카메라를 장착한 아이다의 인지능력은 입력된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지는 못함⁶⁸⁾
 - 즉 계산하려는 자료는 자신의 외부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일정한 고정값을 갖는 것들임
 - 반면 인간은 외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인 창의성으로 귀결되며, 창의성이 예술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AI 로봇의 활동이 예술인가에 대한 담론이 계속될 것임
 - AI 로봇의 예술성 여부는 AI 로봇에 창의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게 하는 다음의 요소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⁶⁹⁾
 - 외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의존성
 - 외부 환경의 변화와 차이를 식별할 수 없는 인지적 한계
 - 외부 환경의 의도적 조작의 불가능성
 - 자율적인 감정 표현의 근본적 어려움 등

- 한편 아이다의 제작자 아이단 펠러는 아이다는 입력된 이미지를 출력하는 프린트가 아니며, 오로지 아이다의 판단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말함⁷⁰⁾
 - 아이다는 알고리즘에 따라 경로를 계산한 후 좌표를 해석해 작품을 그리므로 오로지 아이다만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알고 있으며, 무엇을 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함
 - 또한 아이다가 인간이 물리적으로 완성할 수 없는 복잡하고 상세한 회화 작품이나 3D 작품을 창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68) 김다솜·맹주만, 「인공적 의식과 AI로봇 예술가」, 『철학탐구』, 제6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22, p. 144.

69) 김다솜·맹주만(2022), p. 145.

70) 김주영(2021. 8. 11.)

2) 레픽 아나들의 ‘비지도(Unsupervised)’

- 튀르키예 출신 미디어 예술가 레픽 아나들은 고도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뇌의 활동과 같은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창적 작품을 만들⁷¹⁾
 - 레픽 아나들은 AI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미디어 설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미래를 표현하고자 함

- 특히 ‘비지도(Unsupervised)’는 뉴욕현대미술관의 예술작품 약 13만여점을 합성하여 제작된 작품으로 AI로 가능한 예술작품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평가받음⁷²⁾
 - 2022~2023년 뉴욕현대미술관에 전시된 해당 작품은 예술작품을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형성한 이미지를 무한하게 제공하는 영상설치 작품임

- ‘비지도’은 세 개의 시퀀스로 구성되어 시시각각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이는 보통 시간 한계가 정해진 채로 무한반복되는 비디오 아트와 다른 점임⁷³⁾
 - 시퀀스 중 하나는 물결이 다른 색깔로 펼쳐지고, 다음으로 드로잉 같은 이미지들이, 마지막으로 AI의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래프, 표 등이 나옴

71) 정규리, 「인공지능 시대의 융합 예술: 레픽 아나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3, pp. 386~387.

72) 김옥기, 「예술의 파괴적 혁신: 인공지능과의 결합」, 『ARTNNEWS』, 2023. 10. 10.(<https://www.art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77>, 검색일자: 2025. 2. 12.)

73) 변경희, 「[아트 앤 테크놀로지] 머신러닝이 이해한 뉴욕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중앙일보』, 2023. 1. 28.(<https://news.koreadaily.com/2023/01/27/society/opinion/20230127180704657.html>, 검색일자: 2025. 2. 12.)

[그림 Ⅲ-2] 레픽 아나돌의 ‘비지도(Unsupervised)’



자료: 뉴욕현대미술관,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5535/installation_images/51848;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5535/installation_images/51857;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5535/installation_images/51851, 검색일자: 2025. 2. 13.

- 이와 같이 ‘비지도’가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생성·변경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환경 조건에 반응하여 이를 시각화하기 때문임⁷⁴⁾
 -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방문객의 움직임과 근처 건물의 기상관측소에서 얻은 날씨 데이터를 반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냄⁷⁵⁾
-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이러한 결과물은 ‘비지도’를 기획한 레픽 아나돌도 예측할 수 없음⁷⁶⁾
 - 레픽 아나돌은 AI에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위해 세부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학습시켜 새로운 결과물을 얻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함
- ‘비지도’와 같은 AI 작품은 이제 예술이 이미지를 형성하는 인간의 능력보다는 인간과 기술이 협업하여 비롯되는 상상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함⁷⁷⁾

74) 변경희(2023. 1. 28.)

75) 김옥기(2023. 10. 10.)

76) 소나영, 「동시대 예술과 AI의 공존, AI는 예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WEBZINE ACC』, Vol. 74, 2023. 9. (<https://www.acc.go.kr/webzine/index.do?article=834&lang=ko>, 검색일자: 2025. 2. 12.)

- AI 기술은 기존의 예술작품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패턴이나 조합을 창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이나 감정을 제공함

3)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

- 크리스 카시타노바는 AI 일러스트 프로그램인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를 삽입한 그래픽노블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를 제작함
 - 미드저니는 입력된 텍스트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플랫폼으로 크리스 카시타노바는 총 17페이지 분량의 이미지를 이를 이용해 제작함
- 카시타노바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에 약 1,500개의 프롬프트를 이용했으며,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 프롬프트를 조정하거나 생성된 이미지를 수정함⁷⁷⁾
 - 프롬프트에 유명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래픽노블에 등장 캐릭터의 생김새를 특정 유명인의 얼굴과 닮도록 함
 - 또한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정하였음

77) 정규리(2023), p. 388, p. 392.

78) 손휘용,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저작권 동향 2023년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 p. 2.

[그림 III-3] 크리스 카시타노바의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



자료: 미국 저작권청, “Previous Correspondence ID: 1-5GB561K Re: Zarya of the Dawn (Registration #VAu001480196),” 2023. 2. 21, p. 2.(<https://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검색일자: 2025. 2. 14.)

- ‘새벽의 자리아’는 2022년 미국 저작권청에서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았다가 2023년 취소되고, 텍스트와 이미지의 선정 및 배열만을 포함하는 등록으로 제한됨⁷⁹⁾
- 즉, 작품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AI 생성부분을 배제하여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함⁸⁰⁾
 - 인간이 창작한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문저작물로, AI 산출물을 선택·배열·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편집저작물로 인정함

79) 서욱, 「‘새벽의 자리아’ 판결 분석: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선례 설정」, 『idailynews』, 2023. 12. 7. (<https://www.i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02>, 검색일자: 2025. 2. 14.)

80)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내 생성 AI영화 ‘저작권 첫 인정’…세계 2번째 사례” 일부 보도 사실관계 설명」, 보도설명자료, 2024. 1. 11.

- 미국 저작권청은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므로 사용자는 생성된 이미지의 작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⁸¹⁾
 - 카시타노바가 프롬프트를 반복 실행하며 수정요인을 거쳐 이미지를 생성하였지만 입력된 프롬프트와 미드저니의 출력물인 이미지 사이의 차이가 상당하다고 봄⁸²⁾
 - 특정 프롬프트가 특정 결과물을 생성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프롬프트는 특정 결과를 지시하기보다는 생성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함
-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카시타노바가 이미지를 직접 수정하였으나 이를 새로운 파생작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⁸³⁾
 - AI가 생성한 기존 이미지와 직접 수정한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임
- 미국 저작권청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인간 저자에 한하여 저작자성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임⁸⁴⁾
 - 다만 해당 결정은 ‘새벽의 지리야’의 제작에는 저작자성을 구성하는 창의성과 주도성이 오히려 미드저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⁸⁵⁾

나. 3D 프린팅

1) 반 고흐 미술관의 ‘릴리보스(Rlievos)’

- 반 고흐 미술관은 후지필름 벨기에 지사와 협업으로 3D 스캐닝과 3D 프린팅을 통해 고흐의 작품 총 9점의 복제품을 제작함⁸⁶⁾

81) 손휘용(2023), p. 2.

82) 신흥주, 「저작권의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자성과 창의성에 대한 고찰」, 『인문콘텐츠』, 제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p. 144.

83) 손휘용(2023), p. 2.

84) 신흥주(2023), p. 139.

85) 신흥주(2023), p. 145.

- 3D 프린팅으로 복제된 작품은 다음과 같음
 - 1887년작 ‘클리시 대로(Boulevard de Clichy)’
 - 1888년작 ‘해바라기(Sunflower)’, ‘침실(Bedroom)’, ‘생트마리드라메르 해안의 고깃배(Fishing Boats on the Beach at Les Saintes-Maries-de-la-Mer)’
 - 1889년작 ‘추수(Harvest)’, ‘관목(Undergrowth)’
 - 1890년작 ‘꽃피는 아몬드나무(Almond Blossom)’, ‘해질녘의 풍경(Landscape at Twilight)’,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한 밀밭(Wheatfield under Thunderclouds)’

- 반 고흐의 복제품은 부조, 선명함과 두드러짐을 뜻하는 ‘relief’에서 착안하여 ‘릴리보스(Rlievos)’라고 이름 붙여짐⁸⁷⁾
 - 이는 반 고흐의 작품이 물감을 거칠게 발라 두드러짐이 강한 임파스토 기법을 사용하고, 강렬하고 과감한 색깔이 특징인 데에 기인한 것임⁸⁸⁾

- ‘릴리보스’는 완벽한 색의 재현과 작품 표면의 임파스토 기법의 붓놀림이 표현되어 원본의 이미지와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⁸⁹⁾
 - 또한 액자의 틀과 액자의 뒷부분, 그림의 위조방지를 위한 실(seal)까지 원본과 다름없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음

86) 임동욱,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복제품 탄생」, 『sciencetimes』, 2015. 3. 16.(<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48?searchCategory=220&nscvrgSn=133968>, 검색일자: 2025. 2. 14.)

87)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고흐 명화의 붓놀림을 살려내는 3D 스캔 및 프린팅 기술」, 『CT문화와 기술의 만남』, 2014년 2월호, 2014, p. 87.

88) 김영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팅 회화 사례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 46,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6, p. 56.

89) 김영미(2016), p. 55.

[그림 III-4] 반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나무' 및 액자 복제품



자료: 김영미(2016), p. 55.

- 반 고흐의 복제품은 3D 스캐닝과 프린팅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작품의 현실감과 특징을 잘 살려냈다는 데 의의가 있음⁹⁰⁾
 - 후지필름의 기술팀은 실제 작품들의 고해상도 3D 스캔본을 다량 입수하여 가장 실제와 가까운 색감과 질감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함
 - 반 고흐의 작품은 울퉁불퉁하게 도드라진 거친 표면과 강렬한 색감이 특징이며, 3D 프린팅을 통해 그림의 입체적인 세밀함까지 구현이 가능해짐

90)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p. 88.

- 9점의 원본은 각 260개의 한정판으로 복제되어 ‘릴리보스’ 컬렉션은 총 2,340점이
며, 이는 작품당 2만 5,000유로(3만 4,000달러)에 판매되고 있음⁹¹⁾
- 복제품은 원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원본과 흡사하며, 각 복제품마다 일련번호
가 매겨지며 공식 보증서와 함께 구매자에게 전달됨
- 이렇게 재현된 반 고흐의 작품들은 미술품의 복제품이지만 3D 프린팅 기술로 입체적
인 질감의 회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임
- 기존의 회화를 스캔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가가 고안한 설계도나 도안에 따라 3D
프린팅 기술로 회화를 인쇄한다면 예술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사비나 미술관의 「3D 프린팅 & 아트; 예술가의 새로운 창작도구」전

- 2014년 사비나 미술관은 국내 최초로 3D 프린터를 활용한 「3D 프린팅 & 아트; 예
술가의 새로운 창작도구」전을 선보임⁹²⁾
- 해당 전시는 3D 프린터가 예술가의 작품 제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시각예
술 및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는 전시임
- 3D 프린터는 기존의 기술로는 실현이 불가능하였던 구상물들을 실현시키며,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함⁹³⁾
- 예술가는 3D 프린터를 통해 형태 제작의 한계와 장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창의
적 아이디어를 물질화할 수 있음
- 해당 전시에는 3D 프린팅으로 완성된 결과물을 비롯하여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50여
점이 출품되며 노세환, 정명국, 박진현, 류효열 등 21명의 작가가 참여함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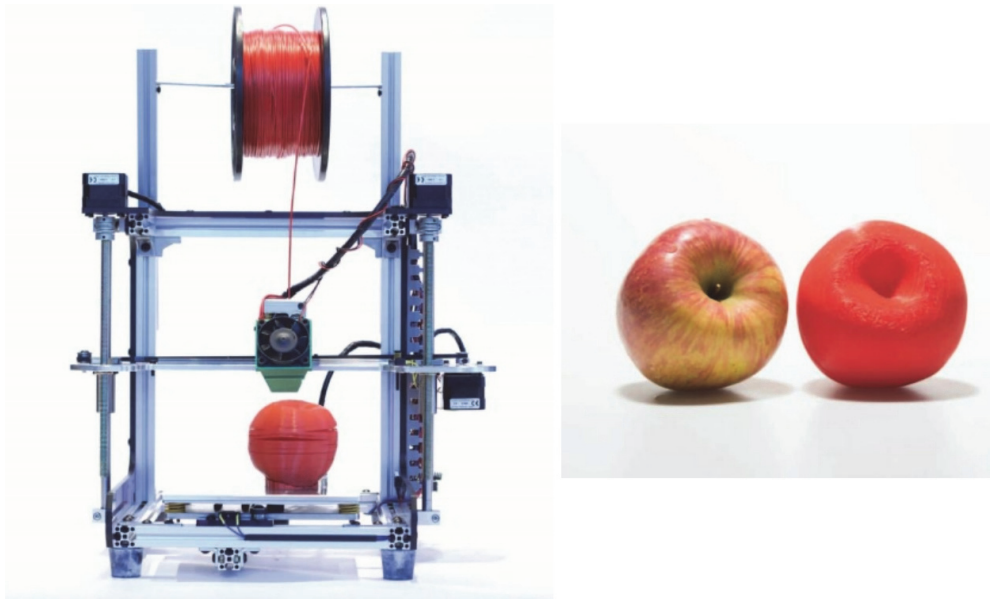
91) 임동욱(2015. 3. 16.)

92) 사비나 미술관, <https://www.savinamuseum.com/kor/exview.action?exdgb=OF&exfgb=&st artdt=&cpage=2&exidx=99&searchFlag=&searchValue=>, 검색일자: 2025. 2. 15.

93) 사비나 미술관, <https://www.savinamuseum.com/kor/exview.action?exdgb=OF&exfgb=&st artdt=&cpage=2&exidx=99&searchFlag=&searchValue=>, 검색일자: 2025. 2. 15.

- 노세환은 바나나, 사과를 촬영하고 3D 프린팅 결과물과 함께 설치하여 복제와 실제의 차이점을 시각화함
 - 이를 통해 3D 프린터가 예술 구현의 도구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
- 정명국은 3D 프린터로 슈퍼카를 출력하고 그것을 프로타주로 작업하여 기존의 실물 프로타주 방식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함
- 박진현은 꽃병의 크기와 모양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생산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다양한 형태의 꽃병을 전시함
 - 이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누구나 제작할 수 있게 하는 3D 프린터의 혁신적 복제성을 표현한 것임

[그림 III-5] 노세환의 '사과와 그 복제품' 및 사과의 출력 과정



자료: 코리아 아트 가이드, https://koreaartguide.com/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1209,
검색일자: 2025. 2. 15.

94) 코리아 아트 가이드, https://koreaartguide.com/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1209,
검색일자: 2025. 2. 15.

다. NFT 아트

1) 뱅크시의 ‘멍청이들(Morons)’

- 얼굴 없는 화가로 알려진 로버트 뱅크시의 ‘멍청이들(Morons)’이 2021년 NFT로 변환되고, 번트 뱅크시(Burnt Banksy)라는 유튜브 계정으로 ‘멍청이들’의 원본을 불태우는 장면이 생증계됨⁹⁵⁾
 - 번트 뱅크시는 뱅크시를 따르는 프로젝트 팀으로 NFT의 완전한 탈중앙화 경매를 지원하는 번트 파이낸스를 출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⁹⁶⁾

- 이러한 퍼포먼스는 번트 뱅크시 팀이 NFT도 가치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실행한 것으로 이들은 실물이 존재하는 것만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⁹⁷⁾
 - 이들은 당신이 NFT 디지털 원본과 실물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물리적 실물에 있을 것이라고 발언함⁹⁸⁾
 - 덧붙여, 실물을 제거하면 NFT 디지털 원본은 대체 불가능한 진정한 작품이 되고, 물리적 그림의 가치는 NFT로 옮겨올 것이기 때문에 불태워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함

95) 이지혜·안승범, 「‘NFT문화콘텐츠’와 파생실재(hyperréal)공동체의 향유: 뱅크시의 문화적 실천과 〈훈민정음〉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6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3, p. 104.

96) 이성우, 「뱅크시 작품도 태운, NFT에 진심인 번트 파이낸스...테크B 콘퍼런스서 만난다」, 『techM』, 2021. 6. 27.(<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5279>, 검색일자: 2025. 2. 17.)

97) 이성우(2021. 6. 27.)

98) 이지혜·안승범(2023), p. 114.

[그림 III-6]뱅크시의 '멍청이들(Morons)'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자료: 김병철(2021), p. 3.

- 이후 '멍청이들'은 NFT 거래 플랫폼인 오픈시에서 원본 가격의⁹⁹⁾ 약 4배인 228.69 이더(약 38만달러)에 판매되어 NFT 아트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음¹⁰⁰⁾
- 이는 블록체인상에 파일화된 비물질적 작품이 의미를 흡수하고, 물질적 원본이 소멸함으로써 NFT 콘텐츠의 원본성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줌¹⁰¹⁾

99) 원본의 가격은 9,500만달러로 알려짐(이성훈, 「NFT의 과거, 현재, 미래…뱅크시가 꿈꾸는 세상은?」, 『뉴스드림』, 2022. 3. 21.(<http://www.news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40115>, 검색일자: 2025. 2. 27.)

100) 김병철,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KISO 저널』, 제44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p. 3.

101) 이지혜·안승범(2023), p. 115.

2) 데미안 허스트의 '통화(The Currency)'

- 영국의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2021년 '통화(The Currency)'라는 컬렉션 회화 작품 10,000여점을 NFT로 민팅하여 판매함¹⁰²⁾
- '통화'는 종이 위에 에나멜 페인트로 무수한 각색의 점이 찍힌 작품으로 뒷면에는 작가의 얼굴이 홀로그램으로 각인되어 있음
- 또한 각 작품마다 번호와 제목이 따로 있으며, 작가의 도장과 서명이 들어 있음¹⁰³⁾

[그림 Ⅲ-7] 데미안 허스트와 '통화(The Currency)'



자료: 임수근, 「“예술작품은 화폐다”...데미안 허스트, NFT 작품 9월부터 소각」, 『YTN』, 2022. 7. 27. (https://www.ytn.co.kr/_ln/0104_202207271805109480, 검색일자: 2025. 2. 17.)

102) 최중철, 「‘증발 시대’의 예술: 데미안 허스트의 〈통화〉 프로젝트」,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28권 제1호, 현대미술학회, 2024, p. 113.

103) 임병선, 「159억원에 NFT로 팔린 작품들 불태운 데미안 허스트 “이 경제난에?”」, 『서울신문』, 2022. 10. 12. (<https://www.seoul.co.kr/news/life/exhibition/2022/10/12/20221012500005>, 검색일자: 2025. 2. 17.)

- 허스트는 ‘통화’를 작품당 1,700파운드(2,000달러)에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NFT로 보유할 것인지, 실물로 보유할 것인지 2022년 여름까지 선택하도록 함¹⁰⁴⁾
 - 실제로 판매된 10,000점의 작품은 5,149점이 물리적 작품으로 남게 되었고, 4,851점이 NFT로 선택되었음

- NFT로 보유하겠다고 선택된 작품은 실물을 전량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허스트는 2022년 10월 11일 작품의 원본을 자신의 갤러리에서 불태우기 시작함¹⁰⁵⁾
 - 이 퍼포먼스는 SNS로 생중계되었으며, 불태워진 작품의 가치는 약 1,000만파운드(약 159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예술작품이 NFT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기술적 대체물에 의해 소각되고 작품이 소멸했음에도 그 가치가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임¹⁰⁶⁾
 - NFT처럼 작품의 가치를 보증하는 디지털 기술의 도래로 물리적 경험에 의해 보증되어 왔던 작품의 가치가 소멸하고, 비물질적 조건으로 대체된 것임

- 이에 대해 허스트는 디지털이든 물리적이든 정의하기 힘든 예술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소각되는 즉시 NFT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함¹⁰⁷⁾
 - NFT나 물리적인 것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인지, 덜 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는 예술이라고 말하며 이 퍼포먼스의 의미를 전달함

104) 이안, 「NFT예술 현황 분석과 국내 미술작품 활용방안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제8권 제6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p. 218.

105) 임병선(2022. 10. 12.)

106) 최중철(2024), p. 115.

107) 이윤오, 「악당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 NFT작품 가치 실험 “약 158억원 가치 실물작품 불태워”」, 『세계일보』, 2022. 10. 13.(<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3513631>, 검색일자: 2025. 2. 17.)

IV.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 예술품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에 따른 유형의 결과물로서 수입통관 시 관세가 과세됨
 - 국제거래되는 회화, 판화, 조각 등과 같은 미술품은 관세의 과세물건임
 - 반면 음악, 문학, 공연, 영화 등 전달매체를 통해 물리적 실체를 갖출 수 있는 산물은 무형으로 국제거래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유형의 예술품을 디지털 제품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디지털 제품이란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운송될 수 있으면서 디지털 형태로 온라인으로도 전송, 즉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도 있는 물품을 말함
 - 디지털 제품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전송의 목적물인 디지털 제품을 전자적 전송물이라고 하고, 전송 행위는 전자적 전송이라고 함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이 국제거래를 통해 국내의 구매자에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관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함
 - 유형의 예술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율 0%가 적용되어 실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관세의 과세물건으로서 세관절차의 대상이 됨
 - 따라서 디지털화된 예술품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때 물리적 실체를 가진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와 관세 과세상 취급이 달라지는지 검토가 필요함

1. 디지털 제품의 분류

- 디지털화된 예술품, 즉 디지털 제품으로서의 예술품은 전자적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자적 전송물이 물품인지 또는 서비스인지 분류의 문제가 발생함
 - 디지털 제품은 실체적 형태가 없으므로 서비스로 볼 수도 있으며, 공급되는 때에 소모되지 않고 소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물품으로도 볼 수 있음¹⁰⁸⁾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분류 문제의 핵심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WTO 규범이며, 적용되는 규범에 따라 자유화 방식이 달라짐¹⁰⁹⁾
 - 물품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이, 서비스에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적용됨

- GATT는 모든 체약당사국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GATS는 체약당사국이 스스로 약속한 범위 내에서만 시장을 개방하거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음¹¹⁰⁾
 - GATT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등의 원칙에 체약당사국 모두 구속됨¹¹¹⁾
 - 반면 GATS는 체약당사국이 허용목록(positive list)에 스스로 결정한 시장개방 분야와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을 기재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108) 정재현·이재선(2020), p. 78.

109) 권현호, 「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명지법학』, 제20권 제2호,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pp. 37~38.

110) 이재민,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화'의 통상협정에 대한 함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국제경제법학회, 2018, p. 102.

111) 이등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동향 및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함의」,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국제경제법학회, 2023, p. 84.

가. 국제적 논의

- 디지털 제품의 분류 문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디지털화된 예술품에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함
 - ① 물품과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 ② WTO 원칙 ③ WTO 규범의 목적에 따라 디지털 제품을 어떻게 분류할지 검토하고자 함

- 먼저 물품과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면 물품은 소유권이 있고, 이를 통해 소유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서비스는 단일 발생으로 소모됨¹¹²⁾
 - 디지털 제품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 자체가 소비되지 않으며 물품과 유사하게 영속성을 유지함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한번 다운로드되면 그 다운로드자가 소유하게 되며, 이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장치로 이동시킨다고 해도 소모되지 않음¹¹³⁾
 - 예술품은 원본만을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형태라도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체계의 구축을 전제로 하며, 이 경우 독점적 소유가 가능함

- 이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디지털 제품은 NFT와 같은 권리증명 체계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물품과는 다르게 소유권이 제한적이지 않음
 - 즉, 한 사람의 소유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품의 특성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음¹¹⁴⁾

- 다음으로 WTO 원칙에 따른 분류를 검토할 수 있는데, WTO는 상업적으로 경쟁관계

112) Sam Fleuter, "The Role of Digital Products Under the WTO: New Framework for GATT and GATS Classification," *Chicago Journal International Law*, Vol. 17 No. 1, University of Chicago, 2016. 7, pp. 165~166.(정재현·이재선(2020), p. 79.에서 재인용)

113) Sam Fleuter(2016), pp. 165~166.(정재현·이재선(2020), p. 79.에서 재인용)

114) 정재현·이재선(2020), p. 79.

- 에 있고 상호 대체가 가능한 동종 물품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음¹¹⁵⁾
-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인 동종성(likeness)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유사·경쟁 물품은 전달되는 방법과 상관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함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무체물로서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제품은 과세대상이므로 동종성 기준 적용에 논란이 됨¹¹⁶⁾
 -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제품과 동종의 물품이 물리적으로 운송된 경우 관세 과세상 취급이 다른 것은 동종성의 원칙 위반임¹¹⁷⁾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유형의 예술품과 동종의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세 과세상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함
 - 이러한 동종성의 기준에 따르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물품과 동일하게 관세 과세상 취급을 받아야 함
 - 그러나 특정 디지털 제품은 동종의 물리적 제품이 불분명하며, 따라서 모든 디지털 제품에 동종성의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¹¹⁸⁾
 - 예를 들어 3D 프린팅의 설계파일은 이를 통해 인쇄되는 결과물을 물리적 유사제품으로 보아야 할지 설계도나 청사진으로 보아야 할지 의견이 분분함
 -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동종의 물리적 제품이 없는 디지털 제품이 출현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 마지막으로 WTO와 각 규범의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에 대한 분류를

115) Kommerskollegium(Sweden The National Board of Trade), "Trade Regulation in a 3D Printed World," 2016, p. 28.(정재현·이재선(2020), pp. 79~80.에서 재인용)

116) 정재현·이재선(2020), p. 80.

117) Rashmi Banga,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s: Implications for the South*, U NCTAD Research Paper No. 29, UNCTAD, 2019, p. 27.(정재현·이재선(2020), p. 80.에서 재인용)

118) Sam Fleuter(2016), p. 166.

검토할 수 있음

- 「GATT」와 「GATS」는 서문에 규범이 추구하는 목적을 기술하고 있음
- WTO와 「GATT」와 「GATS」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역 자유화이며, 이를 고려하면 디지털 제품은 물품으로서 「GATT」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¹¹⁹⁾
 - 「GATT」는 한 국가의 비교 우위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하는 무역 자유화 규정을 「GATS」 보다 많이 정하고 있음
- 한편 「GATS」는 무역 자유화 이외에도 개발도상국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음¹²⁰⁾
 - 「GATS」는 개발도상국이 국내 상품시장에 부여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없이 국내 서비스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함
- 대부분의 WTO 회원국이 예술품의 관세율을 무세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서의 관세의 역할은 미미한 상황임
 - 다만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에 이용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국내 서비스시장 보호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일반적인 디지털 제품은 개발도상국 국내 시장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며, 무역 자유화와 개발도상국의 보호 중 어떤 목적이 우선인지 판단이 어려움
 - 몇몇 조항이 무역 자유화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역 자유화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임¹²¹⁾
- 이와 같이 디지털 형태 예술품의 분류를 ① 본질적 특성 ② WTO 원칙 ③ 규범의 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이를 물품으로 볼지, 서비스로 볼지 판단이 어려움

119) Sam Fleuter(2016), p. 172.(정재현·이재선(2020), p. 81.에서 재인용)

120) Sam Fleuter(2016), p. 170.(정재현·이재선(2020), p. 82.에서 재인용)

121) 정재현·이재선(2020), p. 82.

- 소유권의 증명이 가능한 예술품은 물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는 서비스의 특성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물리적 동종 물품이 분명하기도 하지만, 3D 프린팅의 경우 동종 물품을 결정하기가 어렵기도 하며, 따라서 동종성의 적용이 쉽지 않음
 - 또한 관세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한 분야라기보다는 활발한 국제적인 발전과 교류, 진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술품에 이용된 디지털 기술 자체는 서비스이므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분야이기도 함
- 또한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다른 디지털 제품과 특성, 가치 등이 다르므로 모든 디지털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 일반적인 디지털 제품은 소유에 대한 개념 없이 자유로운 복제와 전달이 가능하고, 소비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제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등 서비스의 성격을 가짐
 - 또한 디지털 제품은 원래 무형의 것으로 물리적 형태를 갖기 위해 전달매체가 필요하므로 동종성을 갖는 물리적 제품이 불분명함
 - 반대로 예술품은 물리적 형태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변경되므로 중간매체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물리적 유사제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음
 -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제품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쟁력이 약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개발도상국의 국내 시장 보호가 요구됨

나. 관련 지침 및 결정사례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이 국제거래되는 때에 관세의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결정 사례는 없으나 다른 조세의 경우를 참조할 수 있음
- 특히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에 대한 지침 등이 관세 과세 여부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

- 디지털 형태를 한 예술품의 국제거래에서 그 원본성 인정을 위한 NFT의 발행이 전제된다고 볼 때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 취급방법을 살펴보고자 함
 - 이하 연구에서는 디지털 이미지를 AI가 생성했는지, 실물 예술품을 디지털화했는지 등과 관계없이 NFT로 민팅된 예술품을 NFT 아트로 총칭함

-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을 일컫는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과 동등하게 교환될 수 없음
 -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한 자산을 고유한 값으로 구분하고, 소유 및 거래정보를 영구적으로 기록하여 디지털 자산화한 것을 말함¹²²⁾

- NFT를 통해 고유한 값을 부여받는 자산, 즉 NFT의 기초자산은 디지털 형태뿐 아니라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실물일 수도 있음
 - NFT 아트의 경우 기존 예술품의 스캐닝 등을 통해 디지털로 변환한 것과 디지털 기술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창작한 것일 수 있음¹²³⁾

- 우리나라는 NFT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지만, NFT의 특성을 부여하는 기초자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함¹²⁴⁾
 - 이에 따르면 NFT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 즉 실물 예술품이 기초자산인 NFT 아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¹²⁵⁾
 - 이와 반대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에서는 NFT 등 가상자산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함¹²⁶⁾

122) 법무법인(유) 화우 디지털 금융팀, 「NFT 관련 법적 쟁점」, Legal Update 2022-03, 2022, p. 1.
 123) 안진국, 「예술체제에서 NFT의 의미와 한계 - 디지털 아트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크립토 아트의 위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3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p. 414.
 124) 국세청 2014. 8. 25, 서면법규과-920
 125) 전우정, 「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 『법조』, 제72권 제1호, 법조협회, 2023, p. 369.
 126) 김태구, 「NFT, 탈세 요술방망이 되나...정부 과세공백 방치」, 『쿠키뉴스』, 2022. 1. 12.(https://

- EU는 조세 및 관세 동맹총국(EU TAXUD) 부가가치세 위원회의 워킹페이퍼에서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인지 판단기준을 제시함¹²⁷⁾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목적물이 NFT 자체인지 기초자산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히며, NFT의 역할을 구분하여 거래 목적물이 무엇인지 검토함

- 먼저 NFT가 등기권리증이나 바우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 NFT 거래는 그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상 취급이 결정된다고 봄¹²⁸⁾
 - NFT가 등기권리증과 같이 자산 처분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 양도의 증명 수단인 경우 해당 자산의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처리가 이루어짐
 - 또한 구매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NFT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바우처로 볼 수 있으며, NFT의 양도는 관련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으로 간주함

- 또한 NFT의 공급은 디지털 토큰, 즉 NFT와 관련 자산으로 구성된 복합공급으로 볼 수 있으며, 복합공급의 구성요소 중 주요 요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¹²⁹⁾
 - 관련 자산의 취득이 주요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자산이 재산인지 서비스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짐
 - 반면 NFT의 가치가 NFT가 제공하는 고유성에서 기인하는 희소성이라면 토큰 공급을 주요 요소로 보아 부가가치세 목적상 취급을 해야 함
 - NFT 자체, 즉 토큰은 디지털 특성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봄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NFT 아트의 기초자산이 실물 예술품인지 디지털 콘텐츠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목적상 재화 또는 서비스 여부가 결정됨

m.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1120170, 검색일자: 2025. 2. 15.)

127) EU TAXUD, *Initial VAT reflections on non-fungible tokens*, VAT Committee Working paper No. 1060, 2023, p. 5.

128) EU TAXUD(2023), pp. 5~6.

129) EU TAXUD(2023), p. 7.

- 실물 예술품을 기초로 NFT가 발행되고, 해당 실물 자산이 NFT 거래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반면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발행하거나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한 후 NFT 거래 시 실물자산을 소각하여 디지털 콘텐츠만 존재하는 경우는 서비스의 공급임
- 즉,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을 나타내는 NFT의 거래는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¹³⁰⁾
- 이 경우 NFT의 공급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사람의 개입 없이 NFT를 공급하는 방법임
 - EU의 부가가치세 지침¹³¹⁾ 제7조 제1항에서는 서비스에 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규정함
 -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은 본질적으로 자동화되어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며, 정보 기술이 없으면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EU의 개별국가 또한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에 연결된 NFT 공급을 서비스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밝힘¹³²⁾
-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등은 NFT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Binding ruling)이나 성명 등을 통해 입장을 공식화함
- 스페인 국세청은 포토샵으로 편집한 사진의 사용권한을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NFT의 공급을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본다고 결정함¹³³⁾
- 거래대상은 NFT로 표현된 디지털 원본 증명서이며, 디지털 아트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아 일반 세율 21%가 적용됨

130) EU TAXUD(2023), p. 8.

131) Council Directive 2006/112/EC

132) EU TAXUD(2023), p. 16.

133) Spanish General Directorate of Taxes, Binding ruling V042-22, 2022. 3. 10.

- 벨기에의 재무부 장관은 NFT에 대한 의회 질문에 NFT가 구매자의 지불수단이 아니라 디지털 수집품 또는 디지털 예술품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변함¹³⁴⁾
 - 따라서 NFT와 관련된 거래가 벨기에에서 발생한 경우 21%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밝힘

- 노르웨이 국세청은 NFT의 공급을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로 간주한다는 성명을 발표함¹³⁵⁾
 - NFT 형태의 디지털 예술품의 공급은 유형의 예술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힘
 -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저작권을 양도하는 판매에만 적용되는 반면 NFT 공급은 NFT 제작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기 때문임

- 반면 이탈리아는 디지털 예술품에 대한 NFT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지침의 초안을 발표함¹³⁶⁾
 - 다만 원본 디지털 예술품, 이와 관련된 소유권을 포함해 원작자가 NFT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NFT의 2차 판매, 물리적 또는 디지털 형태의 자산 소유 증명서로서의 NFT, 유형의 예술품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의 NFT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목적상 NFT 아트는 그 기초가 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과세 처리가 달라지며, 이를 관세에 도입한다면 전자적 전송물은 서비스로 간주됨
 - 예술품이 디지털 형태로 제작, 변환 또는 대체되는 경우 전자적 전송이 가능하며,

134) Belgian Finance Minister, “Réponse à la question parlementaire n° 705 de monsieur Emmanuel Burton du 2021. 3. 11.”, 2021. 12. 24.

135)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Merverdiavgift-avgiftsbehandling av digitale kunstverketter merverdiavgiftsloven § 3-7 fjerde ledd”, 2023. 2. 13.

136) 한국저작권위원회, 「이탈리아 국세청, NFT 부가세 면제 지침 초안 발표」, 저작권 이슈 브리프 2023-9-2호, 2023, p. 4.

디지털 형태의 자산 공급은 서비스의 공급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와 EU는 전자적 전송물의 관세 과세 면제를 주장하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성급한 수용보다는 상황의 복잡성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함¹³⁷⁾
- 앞서 살펴보았던 디지털 형태 예술품의 특징, WTO의 목적, 각국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2. 전자적 전송물의 범위

가. 국제적 논의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 즉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음
-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는 세수 확보뿐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보호와 육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디지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
- 이러한 관행이 유지되어 오던 상황에서 WTO는 1998년 ‘전자상거래에 작업계획에 관한 결정’을¹³⁸⁾ 채택하여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을 한시적으로 도입함¹³⁹⁾
- WTO 일반이사회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지속하기로 하는 모라토리엄을 성문화하고 이를 합의에 의해 연장하기로 함
- 이후 작업계획은 매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옴¹⁴⁰⁾

137) EU TAXUD(2023), p. 16.

138) WTO,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WT/MIN(98)/DEC/2),” 1998. 5. 25.

139) 이천기·이주관·박지현,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54 No.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p. 6.

- 모라토리엄의 연장이 각료회의를 통해 연장되던 중 제11차 각료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자적 전송물의 범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¹⁴¹⁾
 - 무관세 관행은 전자적 전송에만 적용될 뿐 전자적으로 전송된 제품, 즉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후 전자적 전송물의 관세 부과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심해지면서 모라토리엄의 연장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음
 - 모라토리엄 도입 당시 전자적 전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WTO 회원국 간의 합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전자적 전송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전송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은 반대 입장임¹⁴²⁾
 - 콘텐츠를 포함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라토리엄이 단지 통신신호에 대한 관세금지를 의도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함
 - 통신신호의 가치가 신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콘텐츠에 있으므로 이 같은 해석은 모라토리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임
 - 반면 인도 등은 WTO는 전통적으로 전송과 콘텐츠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구분하였고, 모라토리엄 도입 당시 콘텐츠 포함 여부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이와 같이 전자적 전송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입장의 대립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를 통한 세수확보, 국내산업의 영향 등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기인함
 - 즉, 모라토리엄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모라토리엄 연장 문제에 관한 견해 차이의 주요 원인임¹⁴³⁾

140) 2003~2005년은 칸쿤 각료회의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제외(양서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 유지될까」, 『세계는 지금』, Vol. 38, KDI, 2019, p. 57.(정재현·이재선(2020), p. 52.에서 재인용))

141) 이동은(2023), p. 77.

142) 이동은(2023), pp. 81~82.

143) 이동은(2023), p. 78.

-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모라토리엄 적용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세수손실이 선진국에 비해 크다고 주장하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를 인용함
 - UNCTAD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관세 손실액은 양허세율 기준 약 80억달러, MFN 세율 기준 약 34억달러로 이는 선진국보다 약 37배, 약 16배가량 큼¹⁴⁴⁾

- 더욱이 UNCTAD는 3D 프린팅을 위시한 생산방식의 변화로 원격·맞춤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설계도, 소프트웨어의 성장이 확대될 것이라 봄¹⁴⁵⁾
 - 3D 프린터는 CAD 파일로 작성된 설계도를 이용하므로 전자적 전송을 통해 원격 생산을 가능하게 함
 - 또한 대량 생산방식을 대신하여 소량·맞춤형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소비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소프트웨어 성장을 촉진함

- 이에 따라 UNCTAD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손실세액 및 디지털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각국마다 디지털 발전 수준에 따른 유동적인 정책적 재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¹⁴⁶⁾
 - 디지털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시설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국의 산업보호와 공정한 경쟁시장이 필요함
 - 이러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은 WTO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UNCTAD의 보고서에 대해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를 주장하는 국가들이 반발하였으며, 이후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가 이에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함¹⁴⁷⁾
 - ECIPE는 UNCTAD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하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가 미치는 부정적인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함

144) Rashmi Banga,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s: Implications for the South*, UNCTAD Research Paper No. 29, UNCTAD, 2019, pp. 11~12.(정재현·이재선(2020), p. 53.에서 재인용)

145) Rashmi Banga(2019), pp. 25~26.(정재현·이재선(2020), p. 54.에서 재인용)

146) Rashmi Banga(2019), pp. 30~32.(정재현·이재선(2020), pp. 54~55.에서 재인용)

147) 양서진(2019), p. 58.(정재현·이재선(2020), p. 55.에서 재인용)

- ECIPE는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소비 저하는 생산성의 하락, 더딘 경제성장을 초래하며 이는 각종 경제지표의 약화와 세원의 축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함¹⁴⁸⁾
 -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의 GDP는 약 65억달러 감소하며, 투자와 복지에서의 손실액은 각각 약 59억달러, 약 45억달러임¹⁴⁹⁾
 - 이는 UNCTAD가 추정한 개발도상국의 관세손실액 약 34억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임
 - 이러한 경제지표의 약화는 법인세, 소비세, 소득세의 세원을 감소시켜 결국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대립 속에서 2024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엄 연장이 합의되었음¹⁵⁰⁾
 - 모라토리엄의 연장과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의 범위 및 정의, 모라토리엄이 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를 검토하기로 함¹⁵¹⁾
 - 또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산업화를 위해 경쟁조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

- 다만 모라토리엄의 연장 합의가 향후 추가 연장에 불리한 문구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¹⁵²⁾
 - 관세 유예는 차기 각료회의 또는 2026년 3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장한 후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됨
 - 따라서 2026년 3월 31일까지 모라토리엄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14차 각료회의가 연기되는 경우 모라토리엄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음

148) Hosuk-Lee Makiyama, *The Economic Losses from Ending the WTO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ECIPE POLICY BRIEF No.3/2019, 2019, p. 4.

149) Hosuk-Lee Makiyama(2019), pp. 9~10(정재현·이재선(2020), p. 55.에서 재인용)

150) 이천기 외 2인(2024), p. 2.

151) 이천기 외 2인(2024), p. 7.

152) 이천기 외 2인(2024), pp. 9~10.

나. 관련 지침 및 결정사례

- 한편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예술품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NFT의 발행을 전제로 하며, NFT와 관련한 지침이나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이러한 지침이나 사례를 전자적 전송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자 함

- NFT라는 새로운 디지털 제품의 대두는 전자적 전송물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대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임
 - 특히 NFT를 통한 원본의 보증이 필수적인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이라면 디지털 콘텐츠로서 전자적 전송물에 포함돼야 하는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임

- NFT는 특정한 자산을 나타내는 디지털화된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서 NFT가 나타내는 자산과 NFT 자체의 정보를 별도로 관리·저장함
 - NFT는 예술품 등과 같은 자산에 디지털화된 고유한 값을 부여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정보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즉, NFT는 NFT가 나타내는 자산인 디지털 콘텐츠, 토큰을 식별하는 고유식별자, 자산의 정보가 포함된 메타데이터, 거래를 실행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됨¹⁵³⁾
 - 메타데이터는 자산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이터로 자산의 이름·자산의 저장장소·자산 소유자·자산의 거래내역 등이 포함됨
 - NFT는 사전에 결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실행되도록 블록체인에 저장된 프로그램 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구동됨

- 이러한 NFT의 구성요소는 모두 블록체인상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식별자와 스마트 컨트랙트 정도만 저장되며,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콘텐츠는 별도의 장소에 저

153) EU TAXUD(2023), pp. 2~3.

장됨¹⁵⁴⁾

-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
 - 따라서 NFT에 연결된 메타데이터와 디지털 콘텐츠는 특정 서버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장소에 별도로 저장되는 것이 대부분임
- 따라서 구매자가 NFT 아트를 구매하는 경우 작품을 직접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고유 식별자만 갖게 되는 것이며, 그 거래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뿐임¹⁵⁵⁾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인 디지털 콘텐츠는 고유식별자와 연결된 저장소를 통해 접근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음
- 이처럼 디지털 코드인 고유식별자 및 스마트 컨트랙트가 디지털 콘텐츠와 별도로 저장·관리되므로 전자적 전송물에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임
- 전자적 전송물에 디지털 코드만이 포함되고, 디지털 콘텐츠는 전자적 전송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임
- 반면 디지털 콘텐츠의 별도 저장소에 구매자가 접근하여 다운로드할 때에 전자적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전자적 전송물에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음
- 이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NFT가 구동되어 구매자가 고유식별자를 전달받는 것을 일종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음
 - 실제 거래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다운로드되는 때에 전자적으로 전송되어 거래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별도로 보관되는 NFT의 디지털 콘텐츠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는 NFT 거래

154) 안진국(2022), p. 408.

155) 안진국(2022), p. 406.

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의 문제와 연결됨

- NFT 자체가 거래의 본질이라면 NFT 자체의 전송만이 전자적 전송물에 포함되며, 기초자산이 본질이라면 전자적 전송물에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됨
- 따라서 NFT 아트에의 전자적 전송물 범위에 대한 논의 역시 NFT의 본질적인 가치가 NFT의 구성요소 중 어떤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즉, NFT의 가치가 NFT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함
 - NFT 아트의 가치는 희소성과 원본성을 보증하는 NFT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기초자산인 예술품의 가치를 내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EU TAXUD 부가가치세위원회의 NFT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한 설명은 전자적 전송물이 어떤 것인지 결정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음
 - 해당 설명에서는 NFT의 공급과 기초자산의 공급 중 무엇을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음
- EU TAXUD는 NFT의 공급이 디지털 토큰과 관련 자산으로 구성된 복합공급일 경우 자산의 취득이 공급의 주요 요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바우처 역할을 하는 NFT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상 처리가 된다고 밝힘¹⁵⁶⁾
 - 바우처는 판매자가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바우처를 받아야 함을 의무로 정한 증서임¹⁵⁷⁾
- NFT 구매 시 구매자가 NFT를 바우처와 같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고, 이때 NFT가 소각된다면 NFT 구매를 공급으로 보며,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비공급으로 간주함¹⁵⁸⁾

156) EU TAXUD(2023), p. 5.

157) Council Directive 2006/112/EC 30a(1).

158) EU TAXUD(2023), pp. 6~8.

- 예를 들어 구매자가 양말로 교환할 수 있는 NFT를 구매하는 경우 NFT가 양말로 교환되는 때에 NFT는 영구적으로 제거됨
 - 이 경우 NFT의 공급은 양말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실제 양말의 배포는 비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음
- 해당 설명은 NFT의 공급과 그 기초자산의 공급이 발생한 시기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 NFT의 공급이 복합공급에서 보조적인 요소지만 NFT를 구매하는 때에 소유권이 이전하고, 이때를 재화 또는 서비스가 공급되었다고 간주함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이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바우처의 경우와 유사하게 NFT의 공급과 디지털 예술품의 공급 중 NFT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목적상 공급으로 볼 수 있음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은 NFT가 소각되지는 않으나 NFT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준을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과 연결된 NFT의 전자적 전송에도 적용한다면 NFT가 전자적 전송물로서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NFT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때에 디지털 콘텐츠도 함께 전송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디지털 콘텐츠가 다운로드되는 때는 전송으로 보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지침이나 사례들은 특정 상황에 대한 특정 국가의 설명 또는 결정으로 이를 모든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디지털 형태의 예술품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지침이나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판단이 필요함

V.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물 예술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 차세대 디지털 기술은 유형의 예술품을 디지털화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 이미지, 설계도, 고안 등을 유형의 예술품으로 실체화하기도 함
 -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예술품을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창작하거나 제작함으로써 비물질적인 데이터 등이 물질화되는 것임
- 또한 유형의 예술품이 디지털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디지털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유형의 예술품과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하는 경우 유형의 예술품은 디지털 데이터를 구성요소로 갖게 됨
- 이와 같이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요소가 물질화된 예술품, 디지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예술품은 실물 예술품으로서 관세의 과세대상이 됨
 - 이러한 실물 예술품은 유형의 물품으로서 수입통관 시 관세의 과세물건이 되며, 세관절차를 이행해야 함
- 다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물 예술품에 관세를 과세하는 경우 일반적인 예술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물 예술품 또한 일반적인 예술품으로 보아 품목분류를 하여 해당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실물 예술품에도 일반적인 관세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함

1. 품목분류

- 유형의 예술품인 미술품은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에 분류되어 0%의 세율을 적용 받으며 해당 호에 분류되기 위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이러한 기준은 제97류의 주,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의 용어와 주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해설서에서 주와 호의 용어 해석과 설명을 하고 있음
- 관세 목적상 미술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①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되어야 하며 ② 기계적 방식으로 대량생산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음
 - 즉, 인간이 창작·제작한 원본으로서 복제가 가능한 대량생산 방식이 사용되지 않은 미술품만이 제9701호 내지 제9703호에 분류됨

가. 예술가가 직접 창작

1) 관련 논의

- 제9701호의 회화·데생·파스텔, 제9702호의 판화는 예술가가 손으로 그리거나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것을 분류함
 - 따라서 해당 호의 품목분류를 판단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작가의 이력을 확인하고, 해당 작가가 작품을 창작했다고 볼 수 있는 작업을 수행했는지 검토함
-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직접 그린 그림이 등장하였으며, AI를 창작자로 인정하여 해당 그림을 관세 목적상 미술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 한편 AI 플랫폼이 생성하는 그림은 디지털 이미지로서 현행 관세 규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품목분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AI를 예술가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AI의 산출물의 물리적 형태와 관계없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그 구분 없이 살펴보고자 함

- AI의 예술활동에 대해 AI를 단순히 기술 매체로써 예술가의 창작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과 창작자로 인정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AI를 이용한 작품을 미술관에서 전시하기도 함
 - 현재의 AI는 창작물에 대한 의도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주체적인 작품을 생성하는 창작자로 볼 수 없다고 보기도 함

-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다의 제작자 에이단 벨러, AI를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는 레픽 아나들은 AI의 산출물은 예측 불가능하고, 인간의 명령이 아닌 AI의 판단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을 강조함
 - AI가 생성한 산출물은 인간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을 어떻게 그럴지는 오직 AI만이 알 수 있으므로 AI가 창작성을 갖는다고 주장함

- AI가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 또한 인간이 기존의 작품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¹⁵⁹⁾
 - 학습데이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존 작품을 복제할 확률은 극히 낮아지고 새로운 창작물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지 생성 모델인 Stable Diffusion 모델에서 35만개의 이미지를 추출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복제율은 약 0.3%에 불과함

- 그러나 현재 예술가, 즉 인간의 창작만을 미술품으로 인정하는 관세 목적상 분류에 따르면 AI의 창작성이 높아질수록 인간의 개입이 작아지므로 미술품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159) 김영순(2024), p. 142.

것은 AI가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결과물을 산출했다는 것임¹⁶⁰⁾

- 반대로 이는 제작자가 작품 제작과정에서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의 독창성이 부족했다는 의미임
- 반면 AI가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는 예술이 인간 정신의 자율성을 표현하는 분야라는 관점에서 창작성을 판단함
 - 예술의 창조적 과정은 인간의 감정, 경험, 사고에서 촉발된 아이디어가 매체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며, AI는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음¹⁶¹⁾
 - 또한 AI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작의 의도와 목적, 즉 예술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인간 예술가와 같은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없음¹⁶²⁾
- 한편 예술 창작의 이유는 이를 수용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며, 수용자의 평가에 따라서 예술품의 가치가 인정되므로 AI에 대한 판단도 수용자에 따라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¹⁶³⁾
 - 수용자의 평가 결과는 종종 경매로 나타나며, AI의 창작물이 이미 여러 경매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되고 있음

2) 관련 지침 및 결정사례

- AI의 창작물에 대한 관세 목적상 지침이나 결정사례는 없으나 인간의 창작성만을 인정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사례 등을 참조할 수 있음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이는 예술가가 제작한 작품을 미술품으로 인정하는 관세율표와 유사한 기준임

160) 신흥주(2023). pp. 145~146.

161) 정규리(2023), p. 393.

162) 김다솜·맹주만(2022), p. 162.

163) 강병수, 「인공지능이 만든 작업물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강의페이링 공모전, 아주대학교, 2021. 6. 10.

- 우리나라의 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여 AI의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¹⁶⁴⁾
 - 해당 안내서에는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가 포함됨

- 해당 안내서에 따르면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AI 또한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 불가능함¹⁶⁵⁾
 - 따라서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과 AI 자체의 저작자 등록은 불가능함

- 미국 또한 저작권청과 법원에서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인간의 창의성이 저작권 등록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함¹⁶⁶⁾
 - 스티븐 탈러가 AI 시스템을 이용해 제작한 ‘천국의 최신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등록 거부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법원은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창작한 작품만을 보호하며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이 AI가 창작한 작품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 이와 같이 현재의 법과 제도는 인간의 창작물만이 예술품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AI의 창의성이 심화될 수록 AI 산출물은 예술품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됨

- 이러한 관점에서 관세 목적상 품목분류도 AI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그 산출물을 미술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164) 한국저작권위원회(2024. 1. 11.)

165)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pp. 40~42.

166) 김형지·김효정, 「미국의 AI 저작권 최신 판례 동향」, 『2023년 하반기 해외저작권 보호 동향』, Vol. 40,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p. 21.

- 다만 예술은 시간, 장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요소이며, 그 가치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창작이라는 기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함¹⁶⁷⁾

나. 기계적 방법 및 대량생산 방식 제외

- 제9701호의 모자이크, 제9702호의 판화, 제9703호의 조각과 조상은 대량생산된 복제품이나 기계적 방법으로 제작된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제9702호의 기계적 방법에 의한 인쇄는 관세율표상 기계를 사용하거나 기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반복적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¹⁶⁸⁾
 - 제9703호는 재료를 성형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조각 등의 복제품을 12개가량 허용하고 그 이상의 것을 대량생산된 복제품으로 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3D 프린터로 인쇄된 형태의 미술품이 대량으로 복제가 가능한 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유화와 같은 입체감 있는 회화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대량생산 방식을 명시적으로 제한한 조각과 조상을 검토하고자 함

- 3D 프린팅은 디지털 도면을 이용하여 틀이나 절삭도구 없이 소재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기술임¹⁶⁹⁾
 - 3D 프린팅은 3차원의 디지털 파일을 설계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소재를 얇은 층으로 쌓아 입체물을 제작하는 생산방식임

- 3D 프린팅 공정은 제품 출력을 위한 설계도를 제작하는 모델링, 3D 프린팅 기기를 이용한 프린팅, 최종 상품화를 위한 후처리 과정의 단계로 구성됨¹⁷⁰⁾

167) 강병수(2021. 6. 10.)

168) 조세심판원 2023. 3. 13. 조심2022관0096.

169) 정재현·이재선(2020), p. 13.

- 모델링은 설계 소프트웨어 또는 3D 스캐너를 사용해 디지털 도면을 제작하는 단계로 물체를 디자인하거나 스캔하여 데이터화하는 기술이 필요함
 - 프린팅은 설계도를 불러들여 실제로 제품을 출력하는 단계로 원료를 알맞은 위치에 분사하고, 경화시키기 위해 재료를 제어하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됨
 - 후처리 과정은 3D 형태의 제품 출력 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매끄럽게 하는 과정으로 최근 프린팅과 후처리 과정을 통합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모델링 과정에서 작가가 직접 인쇄될 물체를 디자인하거나 설계하여 디지털 도면을 작성함
- 예를 들어 폴 나이랜더는 수학적 원리와 계산으로 산출한 각종 기하학적인 모양의 예술품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내고 있음¹⁷¹⁾
- 또한 적층방식으로 물품을 제조하므로 형상가공에 제약이 거의 없으며, 기존 제조방식으로 제작이 불가능했던 복잡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음¹⁷²⁾
- 적층제조는 어떠한 기하학적 형상도 제조가 가능하며, 복잡하고 비정형적이며, 내부가 비어 있는 형상 제작도 용이함
-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은 작가가 직접 고안하거나 디자인한 독특하고 복잡한 형상으로 제조될 수 있으며 이로써 예술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짐
- 제9703호의 조각이나 조상에는 상업적인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분류되지 않으며, 3D 프린팅 예술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러나 디지털 설계 파일을 가지고 누구나 동일한 형상·품질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3D 프린팅을 대량생산 방식으로 볼 수도 있음

170) 고재경, 「3D 프린팅 기술현황-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제706호, KDB 산업은행, 2014, p. 99.(정재현·이재선(2020), p. 14.에서 재인용)

171) 한국콘텐츠진흥원(2014), p. 91.

172) 정재현·이재선(2020), p. 20.

- 디지털 설계 파일은 복제가 가능하고, 동일한 소재를 충전하여 동일한 3D 프린터로 인쇄한다면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음
- 다만 NFT를 통하여 인쇄된 예술품 자체의 원본성이 보장된다면 복제품이 대량생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예술품에 NFT를 발행하여 NFT의 고유 식별자를 부여받은 예술품과 복제품을 구분할 수 있으며, 원본만을 예술품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3D 프린팅 예술품이 경질재료를 성형하여 조각을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원본으로 간주되는 약간의 복제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3D 프린팅도 재료를 성형하여 입체물을 만드는 방법이며, 특정 수량 이하로 제조된다면 작가의 원작으로 간주되는 복제품에 해당할 수 있음

2. 관세평가

가. NFT 아트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의 화폐성

- 유형의 예술품에 대한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거래내역을 보장함으로써 권리증명과 원본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예술품을 민팅하여 NFT를 발행함
 - 이를 통해 일반적인 유형의 예술품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거래·유통되는 예술품이 됨
- 또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유형의 예술품도 창작·제작에 이용된 디지털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NFT가 개입될 가능성이 큼
 -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NFT로 소유권과

원본성을 보장받아 무단 사용이나 배포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3D 프린팅 인쇄물의 경우 설계 파일의 복제 또는 전달이 용이하고, 제작 공정이 단순하므로 대량 복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NFT로 예방해야 함

- 일반적인 예술품, AI의 물리적 생성물, 3D 프린팅 인쇄물에 대해 발행된 NFT는 모두 NFT 아트의 일종이며, NFT 거래를 통해 실물 예술품의 거래가 이루어짐
- NFT는 토큰의 일종으로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없이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발행·거래·유통됨¹⁷³⁾

- 따라서 NFT 아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자는 그 대가를 NFT 발행에 이용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코인, 즉 암호화폐를 지급해야 함¹⁷⁴⁾
- NFT가 거래되면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NFT의 소유권 변경 내역을 블록체인상에 기록하며, 이로써 NFT의 실물 예술품 또한 소유권이 변경됨

- 이 경우 NFT 아트의 대가로 지급된 암호화폐를 정당한 지급수단으로 보아 실물 예술품 과세가격의 기초로 암호화폐 가격을 사용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함
- 암호화폐가 지급수단인 화폐로 인정되어야 그 가격을 구매자와 판매자가 주고받은 가격으로 보아 NFT와 연계된 실물 예술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재산 가치는 인정함¹⁷⁵⁾
-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173) 코인은 지급·결제수단인 화폐와 유사하게 경제 활동에 대한 대가로 사용되며, 토큰은 필요한 목적이나 역할을 위해 특정한 가치나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코인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며, 토큰은 자체 네트워크 없이 코인의 네트워크를 사용함(이은정, 「NFT, 수집품 외 용도가 있을까?」, 『삼성 SDS 인사이트 리포트』, 2022. 8. 24.(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nft_collections.html, 검색일자: 2025. 2. 24.)

174)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발행되어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코인을 가상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제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함

175)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비트코인을 몰수의 대상인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로 다음을 제시함
 -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 바 가상화폐의 일종임
 - 피고인이 이용자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지급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였음

- 그러나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그 화폐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을 금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함¹⁷⁶⁾
 - 비트코인으로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비트코인이 금전이 아니라고 봄
 - 해당 법령은 금전대차와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며,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반면 미국은 암호화폐의 화폐성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화폐성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모두 있음
 - 다만 최근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부인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18 U.S.C. 제1960조의 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화폐성을 인정함¹⁷⁷⁾
 - 화폐로 간주되는 자금은 이용 가능한 금전적 자원을 말하며 여기에서 금전이란 일반적으로 교환수단, 가치척도,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비트코인은 은행계좌에서 직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므로 금전적 자원이라는 일반적인 화폐의 정의에 해당함

1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

177) United States v. Murgio. 15-cr-769 (AJN). 2016. 9. 19.

- 이와는 다르게 플로리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부인함¹⁷⁸⁾
 - 비트코인은 현금이나 금과 같은 유형의 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함

- 관세국경보호청(CBP)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국제운송보고의 의무가 있는 통화 및 금전적 수단이 아니라고 밝힘¹⁷⁹⁾
 - 물품의 통관과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는 CBP에서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는 NFT 아트의 관세평가에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EU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관세와 관련하여서는 화폐성을 부인하고 있음
 - NFT 아트의 관세평가에서는 관세와 관련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EU 사법재판부는 전통적인 통화와 가상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지침에 따른 서비스의 공급으로¹⁸⁰⁾ 봄¹⁸¹⁾
 - 이러한 교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지침에서 정하는 면세대상 중 통화, 법정화폐로 사용되는 지폐, 동전에¹⁸²⁾ 해당한다고 판시함

- 이와는 반대로 EU TAXUD의 관세법위원회와 EU 집행위원회의 관세 전문가 그룹은 가상통화로 실제 물품의 대가가 지급된다면 수용 가능한 가격이 없는 것으로 봄¹⁸³⁾
 - 송장상 가격이 암호화폐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통화로 정산되는 경우 해당 정산통화가 관세평가의 기초가 됨

178) Florida v. Espinoza. No.3D16-1860. 2019. 1. 30.

179) CBP, “Currency/Monetary Instruments-Definition of negotiable monetary instruments for currency reporting requirements,” 2021.

180) Council Directive 2006/112/EC Article 2(1)(c)

181)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Case C-264/14. 2015. 10. 22.

182) Council Directive 2006/112/EC Article 135(1)(e)

183) EU TAXUD, *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2022, pp. 141~142.

- 송장이나 계약서에서 가격의 정산이 국가통화로 이루어진다고 명시한 경우 국가 통화로 정산된 금액이 물품에 대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됨
 - 이와 반대로 가격정산이 가상통화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인 경우 통화환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상통화로 지급된 대가를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미국과 EU의 관세당국과 달리 호주의 국경수비대(ABF)는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외화를 취급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기로 결정함¹⁸⁴⁾
- 수입물품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금액이 호주 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된 경우 물품의 수출일에 외화와 관련하여 결정된 환율에 따라 호주 통화로 환산해야 함¹⁸⁵⁾
 - 이와 마찬가지로 ABF는 암호화폐를 호주 통화로 환산하기 위하여 물품 수출일의 해당 암호화폐 환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암호화폐의 환율 목록은 ABF가 수입자에게 제공하지는 않고, 화주가 평판이 좋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사용해야 함¹⁸⁶⁾
- 그러나 암호화폐는 ABF가 정기적으로 관세평가 목적으로 고시하는 호주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외화 환율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결정할 때 가치의 환산이 공정하고 확실하다고 정당화하는 것은 수입물품 화주의 의무임
-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암호화폐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암호화폐가 아직 결제수단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그 가치 변동성으로 인하여 가격 산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임

184) ABF,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22/42," 2022.

185) 호주 「Customs Act 1901」 Section 161J(4).

186) ABF(2022).

- 암호화폐가 화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NFT 아트는 그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거래가격에 기초한 관세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없음
 -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관세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는 다음 절에서 수행함

나.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치

- 유형의 예술품을 민팅하여 NFT로 만든 NFT 아트는 기초자산인 실물의 예술품과 NFT 고유식별번호, 메타데이터, 실물 예술품의 디지털본으로 구성됨
 - NFT 아트로 민팅되는 실물자산은 일반적인 유형의 예술품, 즉 미술품과 AI의 물리적 창작물, 3D 프린팅 조형물이 될 수 있음
- 즉 실물자산에 대한 NFT 아트는 실물 예술품과 디지털 구성요소가 함께 있는 형태로, NFT 아트의 거래 시 실물자산의 물리적 이동과 디지털 구성요소의 전자적 전송이 함께 발생함
 - NFT 아트가 국제거래되는 경우 실물 예술품은 관세영역을 물리적으로 통과하는 반면 NFT 데이터는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자의 지갑으로 전송됨
- 이와 같이 물리적 이동과 전자적 전송이 함께 발생하는 거래를 관세 과세상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함
 - 물리적 이동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이동의 대상은 관세의 과세대상이지만 전자적 전송의 목적물은 무관세 관행에 따라 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NFT 아트 거래의 본질이 실물자산인 예술품과 NFT 데이터 중 무엇에서 기인하느냐에 따라 관세가 과세되는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함
 - 실물 예술품이 NFT 아트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NFT 아트의 거래는 관세의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NFT의 가치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

- 반대로 NFT 자체에 NFT 아트의 가치가 있다면 NFT 아트는 전자적 전송물로서 무관세의 대상이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실물 예술품의 가치는 관세가 과세돼야 함
- 엄밀한 의미에서 NFT 아트의 NFT는 실물자산의 소유권 등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실물 예술품의 가치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¹⁸⁷⁾
 - 실물 예술품을 기초로 하는 NFT 아트는 NFT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고 실물 자산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¹⁸⁸⁾
 - 따라서 실물 기반의 NFT 아트의 가치는 실물 예술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실물 예술품이 분실·손상·훼손되면 그 가치가 하락할 수 있음¹⁸⁹⁾
- 이와 같이 실물 예술품을 기초로 발행된 NFT 아트는 실물 예술품의 가치가 본질적이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실물 예술품이 수입되는 때에 관세가 과세됨
 - 이 경우 실물 예술품에 대한 관세율이 적용되며, AI 생성물이나 3D 프린팅 인쇄물은 무세가 적용되는 미술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실제 관세부담이 발생함
- NFT 아트의 가치 전체에 대해 관세가 과세된다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NFT와 그 데이터도 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됨
 - 이처럼 디지털 구성요소를 실물 예술품에 포함하여 관세를 과세하는 것은 전자적 전송물을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임
 - 이는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관세 관행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디지털 구성요소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해 그 가치를 실물 예술품의 과세 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

187) 김영순(2024), p. 157.

188) 김현경, 「NFT 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p. 396.

189) 백세진, 「지금 퍼지컬 NFT를 구입하고 싶은 당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 『nestree』, 2023. 4. 7.(<https://kr.nestree.news/news/articleView.html?idxno=2987>, 검색일자: 2025. 2. 24.)

- 이러한 방법은 NFT 아트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먼저 NFT 아트의 대가로 지불된 암호화폐의 화폐성이 인정되거나 화폐조건이 표시된 물물교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NFT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 암호화폐의 화폐성이 인정된다면 암호화폐를 자국의 통화로 환산한 가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결정함
 - 또한 암호화폐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정통화로 결제할 수 있는 가격을 표시하고, 그 가격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통화에 따른 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결정함¹⁹⁰⁾
- 이 경우 NFT의 거래가격에서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격을 공제하여 디지털 구성요소에 대해 관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WTO 결정을 참고할 수 있음
- WTO는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는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대한 결정을 통해 전자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구성요소에 대한 관세 과세상 취급을 언급함¹⁹¹⁾
 - 이 경우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이나 비용만이 고려돼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비용이 해당 전달매체의 가격과 구별된다면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NFT 아트의 실물 예술품이 전달매체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비과세를 취지로 하는 규정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소프트웨어 또한 디지털 구성요소이므로 NFT 아트의 디지털 구성요소도 이와 유사하게 관세를 과세하지 않을 수 있음

190) WCO 권고의견 6.1

191) WTO 관세평가위원회 결정 4.1

- 다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면 실물 예술품과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격이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NFT 아트의 특성상 실물 예술품과 디지털 구성요소가 별도로 거래되지 않고, 각 가치가 서로의 영향을 받음
 -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격을 NFT 아트의 가격에서 분리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한편 WTO는 이러한 결정의 채택 여부를 각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권리사용료의 규정에 반영하였음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 관련되지 않으며, 따라서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음¹⁹²⁾

- 이는 소프트웨어 거래계약이 본질적으로 저작권에 기초한 권리사용계약이라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WTO 결정과는 차이가 있음¹⁹³⁾
 - WTO는 소프트웨어 과세문제를 전달매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 또는 비용의 구분으로 접근하고 있음

- 특히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소유권을 부여하여 판매거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디지털 구성요소에 대한 대가는 권리사용료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나라의 접근 방법은 NFT 아트를 디지털 구성요소의 과세가격 배제 문제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암호화폐의 화폐성이 인정되지 않아 NFT 아트 거래를 암호화폐와의 물물교환으로 보는 경우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NFT 아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해야 함

19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193) 김기인(2015), p. 177.

- 먼저 동종·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대체 불가능한 NFT의 특성상 적용할 수 없음
 - NFT 아트는 실물 예술품의 희소성과 고유성이 보장되거나, 다른 NFT 아트와 대체될 수 없으므로 동종·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존재하지 않음

- 다음으로 국내 판매가격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액을 공제하는 역산가격 또한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격을 공제할 수 없어 적합하지 않음
 - 국내 판매가격에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므로 국내 판매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그다음으로 적용되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실물 예술품에 대한 가격만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음
 - 산정가격은 수입물품의 가공에 소요되는 가격에 이윤 및 일반경비, 수출 운송비용을 합산한 가격을 말함

- 그러나 실물 예술품의 가격에는 예술적 가치라는 추상적 평가에 따른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정방법은 이러한 가치를 과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실물 예술품의 가격은 희소성·창의성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며, 이러한 가치는 산정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음
 - 따라서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예술품일수록 산정가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소하게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남

- 따라서 산정가격 역시 디지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예술품의 실물 부분만을 과세하기 위한 가격으로 부적합하며, 합리적 기준에 따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함¹⁹⁴⁾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는 선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방법이 있음

194) 「관세법」 제35조

- 이러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
- 선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이란 동종·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기준을 말함
 - 물품의 선적일, 수입물품의 상태, 국내판매 시기 등을 조정하거나 동종·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그러나 NFT 아트가 가지고 있는 예술품의 특성상 선순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한 가격 또한 존재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NFT 아트의 동종·유사물품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인정되는 가격을 확대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또한 국내 판매가격, 산정가격은 기준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구성요소의 가격을 공제하거나 실물 예술품의 가치를 적합하게 반영할 수 없음
 - 해당 방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가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과는 무관함
-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또한 검토해야 함
 - 해당 방법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¹⁹⁵⁾
-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 또한 NFT 아트의 전자적 특성과 대체 불가능한 본질적·예술적 특성에 의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본질적·예술적 특성에 따라 국제시세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전자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므로 산지조사가격 또한 의미가 없음

195) 「관세법」 제35조 제2항

- 따라서 국제거래시세 등과 같이 「관세법」에서 예시로 열거한 가격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적합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국제거래시세, 산지조사가격 등을 조정하는 방법은 예시적 방법이며, 해당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적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NFT 아트 거래의 실질을 검토하면, 이는 결국 NFT 아트의 가치가 어떤 구성요소에서 기인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 즉, NFT 아트의 가치가 실물 예술품에 의한 것인지 예술품의 특성을 부여하며 권리 및 원본 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NFT 자체에 의한 것인지의 문제임

- 이는 NFT의 성격, 기능,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하는 바 NFT 아트의 경우 그 기초자산인 실물 예술품에 가치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다만 예술품을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마다 NFT를 발행하는 등 NFT 아트가 소유권의 거래가 아니라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별도로 고려해야 함

- 다음으로 NFT 아트 거래의 관행을 살펴보면 NFT는 토큰의 일종으로 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거래되며, 이 경우 일종의 거래 수수료가 발생함
 - 예를 들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거래되는 NFT는 그 발행·거래를 검증·기록해주는 네트워크 참여자(node)에게 지급하는 가스비(Gas fee)가 발생함
 - 대부분의 NFT 아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있는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거래수수료를 일반적 수수료와 구분하기 위하여 가스비로 통칭함

- NFT 아트 구매자는 가스비가 NFT 아트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가스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NFT 아트를 구매함
 - 가스비는 NFT 아트의 발행·거래 행위를 실행하여 무결성과 중복 여부를 검증한 후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비용임

- 이와 같은 가스비는 NFT 아트에 필수적 비용이지만, NFT의 발행과 거래와 관련된 비용으로 실물 예술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 따라서 가스비를 실물 예술품과 디지털 요소로 구성되는 NFT 아트에서 디지털 구성요소, 즉 NFT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NFT 아트 거래의 실질과 관행을 고려했을 때 실물 예술품의 가격은 NFT 아트의 거래가격에서 가스비를 공제한 가격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거래의 실질상 NFT 아트 거래의 본질은 실물 예술품에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인정하되 NFT 자체의 가격으로 보이는 가스비를 공제하는 것임

- 그러나 이렇게 산출한 가격은 「관세법」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예시한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명시적으로 열거한 가격 외의 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따라서 디지털 구성요소를 가지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관세청에 사전에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 등을 통해 관세청에 관세평가방법을 수입신고 전에 확인받을 수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있음
 - 사전심사 시 NFT 아트 거래의 실질 및 관행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가스비 등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VI. 시사점

1. 디지털 통상 법령의 제정

- 차세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관세 과세와 관련하여 쟁점사항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관련한 국제적 합의나 제도가 없기 때문임
 - 디지털 제품에 대한 분류, 전자적 전송물의 개념과 범위, 가상자산의 취급 방법 등은 국제적인 합의가 없어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디지털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무역환경도 변화하고 있으나 다자규범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고 있음
 -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서비스 및 물리적 장치와 결합하고 있지만 다자규범은 GATT와 GATS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음¹⁹⁶⁾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 또한 실물의 예술품과 디지털 데이터가 함께 구성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적용할 다자규범을 결정하기가 어려움

- 다자규범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이나 지역무역협정에서 디지털 교역과 관련한 규범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¹⁹⁷⁾
 - 그러나 이러한 규범들도 기존 상품 중 디지털적 성격을 가진 품목에 대하여 일부 특칙을 도입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 조항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음

196) 이동은(2023), p. 85.

197) 이재민(2018), p. 94.

- 디지털 교역과 관련한 통일된 국제규범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교역이 발생하고 있음¹⁹⁸⁾
 - 즉,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고 소비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물품 및 서비스의 일체화 내지 통합화 현상이 생길 것임
 - 또한 이들이 서로 결합하고 발전하며 이를 통해 다시 새로운 물품 및 서비스가 창출될 것임

- 예를 들어 NFT 아트도 하나의 거래에서 디지털 구성요소의 전자적 전송과 실물자산의 물리적 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공급의 일종이라 할 수 있음
 - 디지털 교역의 수단인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에 디지털 구성요소인 전자적 전송물과 실물자산의 상품이 결합하여 공급되고 있음

- 특히 디지털 교역의 발전은 무역의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를 디지털화하여 데이터의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음¹⁹⁹⁾
 - 전통적인 무역이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되면서 무역 플랫폼이 디지털화되어 무역의 대상 역시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디지털 교역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분하는 규범을 대체하여 모든 디지털 교역을 포괄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통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의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함²⁰⁰⁾

- 디지털 통상 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19년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디지털 무역 규정을 무역협정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협정으로 체결하는 단계로 발전함²⁰¹⁾

198) 이재민(2018), p. 99.

199) 박영훈,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KOTRA, 2020, p. 7.

200)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통상 국제규범 선점 경쟁의 본격화」, 『통하는 세상 통상』, Vol. 135, 2023, p. 6.

- 2019년 「마일 디지털 무역협정」, 2020년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의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2020년 싱가포르, 호주의 「디지털 경제 협정」 등이 체결됨
- 이러한 협정은 디지털 통상 규범의 형식적 발전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역 범위 등의 내용적인 측면이나 당사국의 의무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짐²⁰²⁾
 - 전자상거래의 협력 수준에서 데이터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 컴퓨터 설비의 이전, 소스코드 공개, 차세대 디지털 기술의 대응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또한 당사국들의 협력에 의존해야 했던 기존의 조항들과 달리 당사국들의 의무 규정으로 대부분 변경되었음
- 다만 이러한 디지털 협정 역시 다수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규범으로서의 한계를 가짐
 - 즉, 당사국 간의 디지털 통상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로 구속력을 갖지만 협정 당사국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는 적용이 불가함
-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에서 주요 쟁점은 전자적 전송물, 데이터 이전, 새로운 무역 형태의 대응 등이 있음²⁰³⁾
 - 전자적 전송물,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의 문제는 무역의 자유화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 또한 차세대 디지털 기술로 인한 무역 형태의 변화는 기존 국제규범에서 정하지 않은 통상 마찰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쟁점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다양화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각 국가의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
 - 미국은 규제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EU는 역내 단일 시장화는 찬성하나 대외

201) 권현호(2022), p. 45.

202) 권현호(2022), pp. 45~46.

203) 박영훈(2020), p. 7.

개방은 소극적인 상황임²⁰⁴⁾

-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세수확보를 위한 규제권한을 보유하길 희망하고 있음

-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설정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신설했음²⁰⁵⁾
 -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HS코드를 부여하여 제99류에 특례했으며, 현재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제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마련하여 수입자에게 적하목록이나 배송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물리적 검사를 면제함
 - 단지 수입신고 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세관명칭, 수입자 정보, 송장, 거래유형, FOB 가격, 통화 HS 코드, 상품설명 등만 기재하면 됨

-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를 국내법에서 규정하였다는 점, 특히 디지털 제품을 수입통관의 대상에 포함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제품의 수출입 흐름을 체계적으로 집계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요하다고 판단함²⁰⁶⁾
 - 정확한 수출입통계는 자국 디지털 산업을 개선하고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며,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는 산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 인도네시아와 같이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과세를 위한 준비를 하지는 않더라도 통관절차 등을 통해 디지털 제품의 수입을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음
 - 총기류 등 수출입금지 품목의 3D 설계파일의 온라인 전송은 해당 품목이 수출입되

204) 박영훈(2020), p. 10.

205) 토티쿨로바 아셀, 곽동철,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 연구』, 제15권 제2호,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4, pp. 290~291.

206) 토티쿨로바 아셀, 곽동철(2024), p. 293.

었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현행 제도상 이를 감시할 절차가 없음

- 또한 디지털 제품의 복제를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도 디지털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디지털 제품이 국경을 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 그 거래를 포착하거나 거래 당사자나 거래 목적물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 다만 디지털 제품에 국한한 규정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모든 교역을 아우를 수 있는 수준의 법령을 마련해야 함
 - 현재 디지털 통상 협정의 주요 내용인 전자상거래, 전자적 전송물,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 보호, 소스코드, 전자 서명 및 인증 등의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디지털 통상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 거래대상 등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 적합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통상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분명히 하여 우리나라와 동일한 입장인 국가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할 때도 이미 명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 규정을 채택하는 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대하여 국제적 협의를 주도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함
 - 더 이상 규범의 순응자로서 다른 국가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입지를 구축해야 함

- 다만 디지털 통상 분야의 변화가 급격하고, 이에 대한 국제정세 또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방향 설정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된 산업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결정해야 함
 -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디지털 통상 법령을 마련해야 함

2. 변화에 유연한 제도의 도입

-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 관련법의 발전 속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면서 현실과 제도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음
 - 특히 관세 과세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분야에서 이러한 간극이 두드러지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은 말 그대로 날마다 쏟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품을 분류하여 통계와 관세 과세에 이용하는 「HS 협약」은 5년마다 개정되고 있음
 - 1998년 제정된 「HS 협약」은 2022년 제7차 개정이 되었고, 2027년 제8차 개정을 앞두고 있음
-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이 분류되는 기준이나 호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통칙이나 주 등에 따라 유사 호에 분류되거나 잔여물품의 집합호에 분류됨
 - 이는 관련 물품에 대한 부정확한 통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정책적 목적을 설정하거나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함
-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신제품의 관세를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제품을 분류하는 호가 없어 집합호에 분류된다면 해당 신제품에 대해 특정하여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반대로 국내 산업이 취약한 분야를 관세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새로운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가 시의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3D 프린터와 드론임
 - 3D 프린터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호가 없어 사용되는 소재의 종류에 각각 다른 호에 분류되다가 2022년 개정에서 제8445호에 특계됨
 - 금속 재료의 것은 제8463호에, 유리 재료의 것은 제8475호에, 고무나 플라스틱 재료의 것은 제8477호에, 복합 재료의 것은 제8477호에 분류되었었음
 - 드론 또한 그 용도에 따라 제8525호의 카메라, 제8802호의 항공기, 제9503호의 완구 등으로 분류되다가 2022년 제8806호로 특계되었음

- 3D 프린터와 드론이 특계되기 전까지 용도나 사용재료에 따라 분류되어 3D 프린터나 드론에 대한 관세 정책을 이행하기가 어려웠음
 - 또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계와 함께 분류됨에 따라 드론 등의 정확한 수출입통계를 집계하지도 못함
 - 따라서 통계를 관련 산업의 전략을 마련하거나 전망을 예측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함

- 또한 AI가 생성한 미술품, 3D 프린팅 기술로 인쇄된 기하학적이고 독특한 조형물 등은 현재의 품목분류 기준에 따르면 예술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인간이 창작하지 않은 미술품과 기계적이고 대량생산방식인 적층제조 방식으로 제작된 조각은 관세 목적상 예술품이 아님

- 특히 3D 프린팅 인쇄물의 경우 그 재료에 따른 물품으로 분류되며, 3D 프린팅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려움
 -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적층하여 제작된 조각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물품으로 분류되며, 3D 프린팅 인쇄물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적용하기도 어려움

- 이와 같이 현실과 제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간극을 좁히려고 하기보다는 간극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품목분류는 전 세계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HS 협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개정하기는 불가능함

- 가령 정확한 과세가격의 산출을 유예해주는 잠정가격 신고와 같이 품목분류에 대해서도 관세율 적용의 유예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따른 제품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품목분류 재심사 제도와 소급규정을 도입하였으나 결정이나 재결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등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함

- 다만 이러한 품목분류 잠정신고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관세 과세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단순히 특례된 호가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기존의 기준으로 품목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조건을 설정해야 함

- 즉, 관세청이나 WCO 등의 기관에서 품목분류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심사 기관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품목분류 잠정신고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또는 HS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중인 물품과 같이 국제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엄격한 조건으로 품목분류 잠정신고 제도를 운영한다면 품목분류 체계와 기술 발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음
 - 품목분류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관세율을 통한 정책적 목적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품목분류 체계가 마련된 이후 사후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 있음

- 또한 품목분류 재심사와 소급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로 인한 행정 비용, 관세 납부 및 환급으로 인한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음

참고문헌

- 강병수, 「인공지능이 만든 작업물은 예술이 될 수 있는가」, 강의페어링 공모전, 아주대학교, 2021. 6. 10.
- 권현호, 「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명지법학』, 제20권 제2호,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pp. 32~59.
- 고재경, 「3D 프린팅 기술현황-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 제706호, KDB 산업은행, 2014, pp. 84~105.
-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 _____,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김다솜·맹주만, 「인공적 의식과 AI로봇 예술가」, 『철학탐구』, 제67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22, pp. 143~168.
- 김병철, 「왜 다들 NFT에 주목할까」, 『KISO 저널』, 제44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pp. 1~6.
- 김영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팅 회화 사례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 46,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6, pp. 48~57.
- 김영순, 「디지털 시대의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 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조세연구소, 2024, pp. 125~177.
- 김현경, 「NFT 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pp. 391~432.
- 김형지·김효정, 「미국의 AI 저작권 최신 판례 동향」, 『2023년 하반기 해외저작권 보호 동향』, Vol. 40, 한국저작권보호원, 2023, pp. 20~31.
- 박영훈,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KOTRA, 2020.

- 법무법인(유) 화우 디지털 금융팀, 「NFT 관련 법적 쟁점」, Legal Update 2022-03, 2022.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통상 국제규범 선점 경쟁의 본격화」, 『통하는 세상 통상』, Vol. 135, 2023, pp. 6~7.
- 설문원, 「예술기록의 분류와 정리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11, pp. 217~247.
- 손휘용, 「美 저작권청, AI를 이용한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제한」, 저작권 동향 2023년 제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3.
- 신홍주, 「저작권의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자성과 창의성에 대한 고찰」, 『인문콘텐츠』, 제7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3, pp. 133~150.
- 안진국, 「예술체제에서 NFT의 의미와 한계 - 디지털 아트의 변증법적 운동에서 크립트 아트의 위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43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22, pp. 395~429.
- 양서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 유지될까」, 『세계는 지금』, Vol. 38, KDI, 2019, pp. 57~59.
- 이동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동향 및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한 합의」, 『국제경제법연구』, 제21권 제3호, 국제경제법학회, 2023, pp. 75~104.
- 이안, 「NFT예술 현황 분석과 국내 미술작품 활용방안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제8권 제6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pp. 215~222.
- 이지혜·안승범, 「‘NFT문화콘텐츠’와 파생실재(hyperréal)공동체의 향유:뱅크시의 문화적 실천과 〈훈민정음〉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56호,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23, pp. 101~121.
- 이재민,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 상품·서비스 교역 ‘일체화’의 통상협정에 대한 합의」, 『국제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국제경제법학회, 2018, pp. 93~131.
- 이재경, 「미술품 관련 돈세탁에 대한 법률적인 접근」, 『일감법학』, 제31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pp. 157~179.
- 이천기·이주관·박지현,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결과와 후속 협상 동향: 평가 및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54 No.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전우정, 「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 『법조』, 제72권 제1호, 법조협회, 2023, pp. 325~375.

정규리, 「인공지능 시대의 융합 예술: 레픽 아나돌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23, pp. 383~394.

정재현·이재선,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른 무역 및 통관환경의 변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최성호, 「예술품의 국제거래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법학논고』, 제68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pp. 331~356.

최종철, 「‘증발 시대’의 예술: 데미안 허스트의 〈통화〉 프로젝트」, 『현대미술학 논문집』, 제28권 제1호, 현대미술학회, 2024, pp. 111~132.

특토굴로바 아셀, 곽동철,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 연구』, 제15권 제2호,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4, pp. 283~298.

한국저작권위원회, 「“국내 생성 AI영화 ‘저작권 첫 인정’…세계 2번째 사례” 일부 보도 사실관계 설명」, 보도설명자료, 2024. 1. 11.

_____, 「이탈리아 국세청, NFT 부가세 면세 지침 초안 발표」, 저작권 이슈 브리프 2023-9-2호, 2023.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한국콘텐츠진흥원, 「반고흐 명화의 붓놀림을 살려내는 3D 스캔 및 프린팅 기술」, 『CT문화와 기술의 만남』, 2014년 2월호, 2014, pp. 86~92.

홍용기·이재선,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EU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ABF, “Australian Customs Notice No. 2022/42,” 2022.

CBP, “Currency/Monetary Instruments-Definition of negotiable monetary instruments for currency reporting requirements,” 2021.

EU TAXUD, *Initial VAT reflections on non-fungible tokens*, VAT Committee Working paper No. 1060, 2023.

- _____, *COMPENDIUM OF CUSTOMS VALUATION TEXTS*, 2022.
- Hosuk-Lee Makiyama, *The Economic Losses from Ending the WTO Moratorium on Electronic Transmissions*, ECIPE POLICY BRIEF No.3/2019, 2019.
- Kommerskollegium(Sweden The National Board of Trade), “Trade Regulation in a 3D Printed World,” 2016.
- Rashmi Banga, *Growing Trade in Electronic Transmissions: Implications for the South*, UNCTAD Research Paper No. 29, UNCTAD, 2019.
- Sam Fleuter, “The Role of Digital Products Under the WTO: New Framework for GATT and GATS Classification,” *Chicago Journal International Law*, Vol. 17 No. 1, University of Chicago, 2016. 7, pp. 154~177.
- WTO,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WT/MIN (98)/DEC/2),” 1998. 5. 25.
- 김수경, 「비디오아트용 DVD는 예술품」, 『동아일보』, 2004. 2. 1.(<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40201/8025019/1>, 검색일자: 2025. 2. 5.)
- 김옥기, 「예술의 파괴적 혁신: 인공지능과의 결합」, 『ARTNNEWS』, 2023. 10. 10.(<https://www.artn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77>, 검색일자: 2025. 2. 12.)
- 김주영, 「인간을 그리는 로봇, 아이다(Ai-da)」, 『윙뉴스』, 2021. 8. 11.(<https://www.wi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6>, 검색일자: 2025. 2. 10.)
- 김지연, 「美 미술전서 AI가 그린 그림이 1위…“이것도 예술인가” 논란」, 『연합뉴스』, 2022. 9. 4.(<https://www.yna.co.kr/view/AKR20220904008400009>, 검색일자: 2025. 2. 7.)
- 김진영·임명규, 「수십억원짜리 미술품에도 세금은 ‘0원」, 『조세일보』, 2006. 6. 1.(<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6009>, 검색일자: 2025. 2. 15.)
- 김태구, 「NFT, 탈세 요술방망이 되나…정부 과세공백 방치」, 『쿠키뉴스』, 2022. 1. 12.(<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1120170>, 검색일자: 2025. 2. 15.)

- 노자운, 「미술품 이용해 검은돈 세탁하는 중국 부자들」, 『조선일보』, 2014. 2. 24.(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4/2014022400531.html, 검색일자: 2025. 2. 20.)
- 문지연, 「18억원에 팔린 수학자 초상화 한 점…대박 난 화가, 사실 로봇이었다」, 『조선일보』, 2024. 11. 12.(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1/09/GM5RPGFAMBCNNLQTAPPY37IFVA/, 검색일자: 2025. 2. 10.)
- 백세진, 「지금 피지털 NFT를 구입하고 싶은 당신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 『nestree』, 2023. 4. 7.(<https://kr.nestree.news/news/articleView.html?idxno=2987>, 검색일자: 2025. 2. 24.)
- 변경희, 「[아트 앤 테크놀로지] 머신러닝이 이해한 뉴욕현대미술관의 아카이브」, 『중앙일보』, 2023. 1. 28.(<https://news.koreadaily.com/2023/01/27/society/opinion/20230127180704657.html>, 검색일자: 2025. 2. 12.)
- 서 욱, 「'새벽의 자리아' 판결 분석: 미국 저작권청, 새로운 선례 설정」, 『idailynews』, 2023. 12. 7.(<https://www.i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202>, 검색일자: 2025. 2. 14.)
- 소나영, 「동시대 예술과 AI의 공존, AI는 예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WEBZINE ACC』, Vol. 74, 2023. 9.(<https://www.acc.go.kr/webzine/index.do?article=834&lang=ko>, 검색일자: 2025. 2. 12.)
- 유재철, 「고가 미술품 해외거래는 과세 사각지대」, 『시사저널』, 2016. 5. 4.(<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739>, 검색일자: 2025. 2. 20.)
- 이성우, 「뱅크시 작품도 태운, NFT에 진심인 번트 파이낸스…테크B 콘퍼런스서 만난다」, 『techM』, 2021. 6. 27.(<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85279>, 검색일자: 2025. 2. 17.)
- 이성훈, 「NFT의 과거, 현재, 미래…뱅크시가 꿈꾸는 세상은?」, 『뉴스드림』, 2022. 3. 21.(<http://www.newsdream.kr/news/articleView.html?idxno=40115>, 검색일자: 2025. 2. 27.)

- 이윤오, 「악동 미술가 데미안 허스트 NFT작품 가치 실험 “약 158억원 가치 실물작품 불태워”」, 『세계일보』, 2022. 10. 13.(<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3513631>, 검색일자: 2025. 2. 17.)
- 이은정, 「NFT, 수집품 외 용도가 있을까?」, 『삼성 SDS 인사이트 리포트』, 2022. 8. 24.(https://www.samsungsd.com/kr/insights/nft_collections.html, 검색일자: 2025. 2. 24)
- 임대준, 「AI 로봇의 튜링 초상화, 소더비서 15억에 낙찰…“미술 시장 신기원 열어”」, 『AI 타임즈』, 2024. 11. 9.(<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131>, 검색일자: 2025. 2. 10.)
- 임동욱,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복제품 탄생」, 『사이언스타임즈』, 2015. 3. 16.(<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view/menu/248?searchCategory=220&nscvrgSn=133968>, 검색일자: 2025. 2. 14.)
- 임병선, 「159억원에 NFT로 팔린 작품들 불태운 데미안 허스트 “이 경제난에?”」, 『서울신문』, 2022. 10. 12.(<https://www.seoul.co.kr/news/life/exhibition/2022/10/12/20221012500005>, 검색일자: 2025. 2. 17.)
- 임수근, 「“예술작품은 화폐다”…데미안 허스트, NFT 작품 9월부터 소각」, 『YTN』, 2022. 7. 27.(https://www.ytn.co.kr/_ln/0104_202207271805109480, 검색일자: 2025. 2. 17.)
- 정준모, 「미술품은 관세 면제…‘작품-상품’ 헛갈리는 현대미술품 세금 재판도」, 『문화일보』, 2019. 3. 18.(<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19031801032212000001>, 검색일자: 2025. 2. 14.)
- 조성식, 「삼성 비자금-국제 갤러리, ‘수상한 거래’ 내막」, 『신동아』, 2008. 3. 7.(<https://shindonga.donga.com/society/article/all/13/107181/2>, 검색일자: 2025. 2. 20.)
- 『조세일보』, 「‘바늘여인’ 세관서 찬밥신세-법원서 작품인정」, 2001. 2. 2.(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8898#_digitalcamp, 검색일자: 2025. 2. 5.)
- 최윤영, 「NFT 아트는 진짜 예술인가」, 『ANTI EGG』, 2023. 10. 2.(<https://antiegg.kr/>

17703/, 검색일자: 2025. 2. 7.)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3866>, 검색일자: 2025. 2. 18.

_____,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1188>, 검색일자: 205. 2. 20.

관세청 블로그, 「예술품의 관세와 부가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718552477&categoryNo=14&proxyReferer=, 검색일자: 2025. 2. 18.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26530f72a9247189eed14d0ef6d34ea>, 검색일자: 2025. 2. 18.

_____, <https://ko.dict.naver.com/#/entry/koko/3c820b67f8c148479b0697e1b7ca269e>, 검색일자: 2024. 11. 5.

_____,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286c380616347b39505282abd657aa1>, 검색일자: 2025. 3. 21.

_____,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ad74efb708e460e9730fc23e3e89ab3>, 검색일자: 2025. 3. 21.

_____,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d8bc58b969c4d81a1bb65d64b7f820c>, 검색일자: 2025. 3. 21.

네이버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3692&cid=40942&categoryId=33451>, 검색일자: 2025. 2. 11.

네이버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44120&cid=43659&categoryId=43659>, 검색일자: 2024. 11. 7.

네이버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48919&cid=43665&categoryId=43665>, 검색일자: 2025. 2. 4.

사비나 미술관, <https://www.savinamuseum.com/kor/exview.action?exdgb=OF&>

- exfgb=&startdt=&cpage=2&exidx=99&searchFlag=&searchValue=, 검색일자: 2025. 2. 15.
-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word_no=96119&sense_no=136754&viewType=confirm, 검색일자: 2025. 2. 4.
- _____,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477857&viewType=confirm, 검색일자: 2025. 2. 4.
- 코리아 아트 가이드, https://koreaartguide.com/bbs/board.php?bo_table=archive&wr_id=1209, 검색일자: 2025. 2. 15.
- 한국문화정보원, https://www.kcisa.kr/kr/contents/cultureDigital_about/view.do#content, 검색일자: 2025. 2. 4
- 미국 저작권청, “Previous Correspondence ID: 1-5GB561K Re: Zarya of the Dawn (Registration # VAu001480196),” 2023. 2. 21.(<https://copyright.gov/docs/zarya-of-the-dawn.pdf>, 검색일자: 2025. 2. 14.)
- 뉴욕현대미술관,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5535/installation_images/51848, 검색일자: 2025. 2. 13.
- _____,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5535/installation_images/51857, 검색일자: 2025. 2. 13.
- _____, https://www.moma.org/calendar/exhibitions/5535/installation_images/51851, 검색일자: 2025. 2. 13.
- 관세평가분류원 2021. 7. 19. 품목분류3과-4087
- 관세평가분류원 2021. 8. 2. 품목분류3과-4441
- 국세청 2014. 8. 25, 서면법규과-920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

조세심판원 2023. 3. 13. 조심2022관0096 결정

조세심판원 2024. 9. 9. 조심2024관0033

Belgian Finance Minister, “Réponse à la question parlementaire n° 705 de monsieur Emmanuel Burton du 2021. 3. 11., ”2021. 12. 24.

Florida v. Espinoza. No.3D16-1860. 2019. 1. 30.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Merverdiavgift - avgiftsbehandling av digitale kunstverk etter merverdiavgiftsloven § 3-7 fjerde ledd”, 2023. 2. 13.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 Case C-264/14. 2015. 10. 22.

Spanish General Directorate of Taxes, Binding ruling V042-22, 2022. 3. 10.

United States v. Murgio. 15-cr-769 (AJN). 2016. 9. 19.

관세연구 24-0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예술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발행 2024년 12월 31일

저자 최인혁 · 이재선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03-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